

월간

# 재정포럼

2023. February  
Vol.320

02



---

## 권두칼럼

뜻밖의 이메일

| 김두열

---

## 현안분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

| 전병목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

| 강동익

---

## 정책토론포트

2023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회의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3.02 Vol.320

월간 재정포럼 2023년 2월호 통권 제320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http://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02 뜻밖의 이메일 | 김두얼

### 현안분석

0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 | 전병목

2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 | 강동익

### 정책토론포트

44 2023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회의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4 미국 -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뜻밖의 이메일



김두열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을까? 이메일 주소를 보면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제작년 10월 ‘질문(Question)’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면서 떠올린 물음이다. 내용을 보니 메일을 보낸 사람은 로빈슨 교수가 맞았다. 그는 경제발전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버클리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등을 거쳐 현재는 시카고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과 함께 쓴 「경제발전 격차의 식민지적 기원(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partment : An Empirical Investigation)」이라는 논문은 제도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명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획기적인 연구다. 구글 검색에 따르면 2001년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1만 7,000회 가까이 인용될 정도로 경제학계를 넘어 사회과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대한 그의 연구를 집대성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두 권 모두 대런 애쓰모글루 공저, 우리말 번역)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전 세계 정책실무가들의 필독서로 여겨지고 있다.

로빈슨 교수의 메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1960~70년대에 있었던 수출진흥확대 회의와 관련해서 내가 참여했던 연구를 읽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당연히 수락했고, 당시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다른 두 연구자와 나, 그리고 로빈슨 교수는 2시간 가까이 좁은 회

의를 했다. 이후로도 로빈슨 교수는 가끔씩 연구와 관련해서 메일을 통해 질문 하곤 했다.

그러던 중 작년 늦은 봄, 나는 문득 로빈슨 교수를 한국에 초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으로서 아시아법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을 기획하던 차에, 로빈슨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모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보내는 대가가 과연 시간을 내서 서울에 오려고 할까 싶었지만,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회신이 곧바로 왔다. 지금까지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 결과로 작년 10월 로빈슨 교수는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포함한 여러 일정을 수행했다. 특히 KDI국제정책대학원이 마련한 세미나의 특별강연에서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그가 현재 진행하는 연구의 잠정 결과도 소개하였다. 나도 잘 몰랐던 자료들을 발굴해 1960년대에 정부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했는지 분석한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다수의 연구와 저작에서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내놓을 정도로 로빈슨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목하고 있었다. 단지 예전에는 한국이 관심의 대상 정도였는데 비해, 최근 들어 직접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는 이런 변화가 지난 수십 년간 수행했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많은 연구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보여주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실제 성과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독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실패 혹은 부분적 성과보다 확실하게 검증된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을 연구하도록 이끄는 요인이라는 뜻이다.

공식 일정 외의 시간에 나는 초청자라는 이유로 로빈슨 교수와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특권을 누렸다. 대화는 주로 로빈슨 교수가 내게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한국경제사에 대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


로빈슨 교수는  
다수의 연구와 저작에서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한과 북한을 들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경제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학자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느슨해져 가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로빈슨 교수와의 만남은 워낙 인상 깊고 소중한 경험이라 자세히 소개했지만,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해외 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경험은 여러 차례 있었다. 아울러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보았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관심은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일깨워주는, 그리고 보다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각성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걷고 어떤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과문한 탓인지 한국의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사를 분석하는 작업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외국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기보다는 우리 학자들이 한국 정부의 재정사(財政史)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공한 정책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정책은 실패한 대로 온전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현안분석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

강동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0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



전병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yungj@kipf.re.kr

## 1. 서론

2022년 9월부터 제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단계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기존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 성별·연령까지 포함하던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제로의 개편이다. 1, 2단계 개편을 통해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및 자동차 기반 산출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제로의 이행은 두 가지 측면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요율결정이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취지를 따르려면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이행에는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료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2018; 2022)에 따르면 1차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규모는 연간 기준 8,493억원, 2차 개편으로는 연간 2.4조원(직장가입자 등 포함 시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sup>1)</sup> 중 하나가 최저

1) 최고보험료, 즉 보험료 상한도 하나의 정책방안이나 그 대상자 규모가 매우 작아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보험료<sup>2)</sup>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험료이다. 사회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통해 편익과 비용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sup>3)</sup> 이는 피보험자들의 제도 순응성과 함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부담능력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과 함께 편익에 따른 응익부담 원칙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소득 보험료의 결정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들어 따라, 고령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이 중요하다. 2022년 9월부터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소득의 50%(이전 3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수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인정 시 기존의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하는 관리방안 마련을 통보했다.<sup>4)</sup> 따라서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최저보험료의 경우 응능부담 원칙과 응익부담 원칙의 조화방안을 모색한다. 연금소득 보험료는 이중부과 방지의 관점, 즉 동일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반복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부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금소득을 형성하는 근원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중부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재정 상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개인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가입자

본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을  
살펴본다.

2) 보험료 하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3) 개인위험의 반영은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제도 체계에서 보험급여의 차이를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 「연합뉴스」,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피부양자 따질 때 반영 검토」, 2022. 07. 31., [https://www.yna.co.kr/view/AKR20\\_220729\\_118700501](https://www.yna.co.kr/view/AKR20_220729_118700501), 검색 일자: 2022. 12. 1.

직장가입자는  
개인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가 된다.

의 형제자매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또는 5.4억~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이다. 이러한 피부양자의 소득 또는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기반하여 부과하는 보험료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6.99%)을 곱하여 산정한다. 동 보험료는 직장가입

<표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2022년)

가입자 유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li> <li>개인단위로 부과</li> <li>(예외)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li> <li>(피부양자)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li> <li>세대 단위로 부과</li> </ul>
부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6.99%</li> <li>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이외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의 6.99%(보수 외 소득 중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50%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li> <li>보험료 부과점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부과점수의 합</li> <li>소득은 최저 336만원에 95.334점을 기준으로 1만원당 0.28373112점 적용(소득 상한은 6억 2,722만원으로 그 이상은 17,796.15점 부과)</li> <li>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 보증금 및 월세 평가 금액 등 합산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점수 부여(최저 22점~최고 2,341점)</li> <li>자동차(사용연수 9년 이하, 차량가액 4천만원 초과 시) 배기량과 사용연수별 차등 점수 부여(최저 11점~최고 217점)</li> </ul>
상·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307,100원)</li> <li>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653,550원)</li> <li>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0%~8.5%(19,5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653,550원)</li> <li>보험료 하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의 90~100%(19,500원)</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포괄한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 변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급여, 해외주둔 군인 및 군무원 급여,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 등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월액 이외 다른 소득, 즉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다. (보수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 이외의 열거된 다른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보수 외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50%를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맞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한 세대원 전체를 합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기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당 보험료를 곱하여 세대당 보험료를 산출한다. 여기서 소득의 최저수준은 연 336만원이다. 재산 기반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보증금 및 월세 평가 금액의 합계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다. 또한 자동차 기반 보험료는 사용연수 9년 이하 및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완료하여 소득기준이 강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가구 구성원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1단계)와 재산 및 자동차 기반 보험료의 축소(1, 2단계)라 할 수 있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sup>5)</sup> 등이 실제 부담능력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 민원의 대상이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과범위를 확대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낮추었다. 부과체계 개편 이전 3개 유형별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던 것을 합산소득 연 3,400만원으로(1차 개편), 다시 2,000만원(2차 개편)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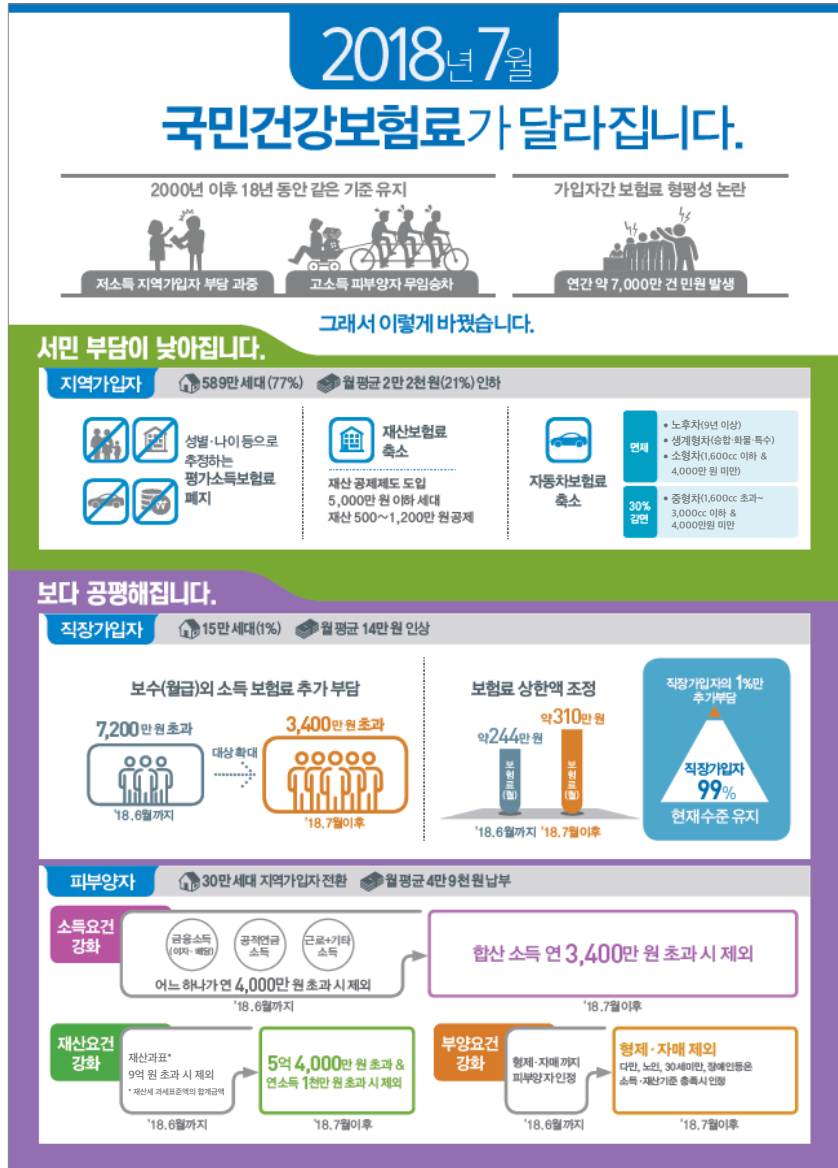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도 지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5) 세대 구성원들의 성, 연령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완료하여  
소득기준이 강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림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출처: 보건복지부,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보도자료, 2018. 6. 19.

편의 핵심 내용이었다. 1차 개편(2018년 7월 적용)을 통해 소득요건은 이전의 4,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차 개편(2022년 9월 적용)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 재산요건 역시 1차 개편(2018년 7월 적용)을 통해 이전의 9억원 초과에서 5.4억원 초과 및 소득 1,000만원 초과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로 강화되었다.

[그림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2. 8. 30.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가구 구성원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1단계)와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의 축소(1, 2단계)라 할 수 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남은 과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증가로 인해 2020년대 중후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9)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시나리오에 따라 2024~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sup>6)</sup>했다. 이 전망은 2020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

6)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8%를 적용하였을 경우로 상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증가로 인해  
 2020년대 중후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

<표 2>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현금흐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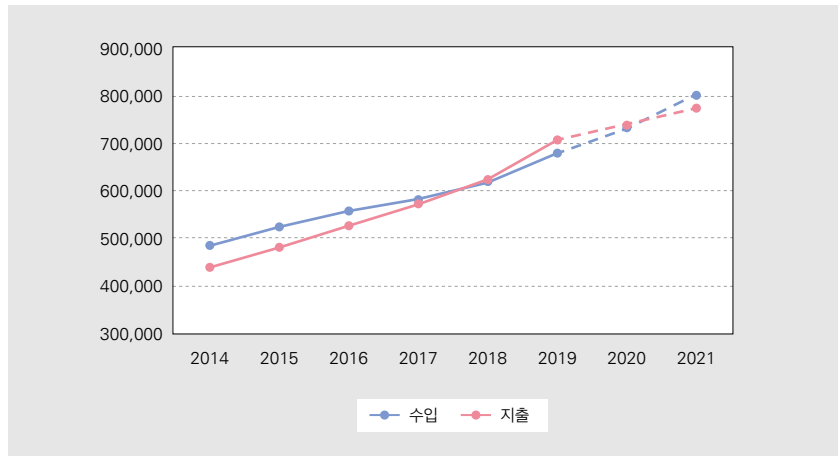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A)	524,009 (8.0)	557,195 (6.3)	579,990 (4.1)	621,159 (7.1)	680,643 (9.6)	734,185 (7.9)	804,921 (9.6)
보험요율	6.07	6.12	6.12	6.24	6.46	6.67	6.86
지출(B)	482,281 (9.8)	526,339 (9.1)	572,913 (8.8)	622,937 (8.7)	708,886 (13.8)	737,716 (4.1)	776,692 (5.3)
재정수지 (A-B)	41,728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적립금 (적립배수)	169,800 (0.35)	200,656 (0.38)	207,733 (0.36)	205,955 (0.33)	177,712 (0.25)	174,181 (0.24)	202,410 (0.26)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부과요율임  
 2. 적립금 적립배수는 (당해 건강보험 지출/연말 적립금)임  
 출처: 보건복지부(2015~2020); 국민건강보험공단(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단위: 억원)



출처: 보건복지부(2015~2020); 국민건강보험공단(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 의료지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위생 개선 등으로 인해 지출증가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2018~2022)으로 인해 2019년 지출증가율은 13.8%로 크게 높아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 지출증가율은 4.1%, 5.3%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출증가율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 즉 적립배수(지출/적립금)는 2015~2017년 0.35 수준을 유지하다가 보

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9년 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후 코로나19로 지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부터 건강보험 적립금 감소추세는 빨라질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최저보험료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비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적용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 비용을 조달함에 있어 최소 가입비의 수준을 급여비 지출의 일정 정도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이 심해져 보험료에 대한 순응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와 재분배적 기능이 더 약화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회보험 제도로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준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sup>7)</sup>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정립 역시 고령화로 인한 연금소득 증가에도 건강보험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어떤 원칙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Ⅲ.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

#### 1. 최저보험료

건강보험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험제도의 원리는 건강위험의 비용 또는 보장금액을 가입자가 연합하여 나누는 것이다.<sup>8)</sup> 이때 개인별 보험료(Premium)는 개인의 건강위험 발생 특성에 따른 기대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건강보험은 사적보험과 달리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를 결정한다. 즉 개인별 건강위험 발생 특성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서비스 역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다. 보험료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부담하는 최저보험료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7) 저소득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재분배 효과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8)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독점 여부, 소비 필수성 등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원가주의(AC=AR), 서비스 가치주의(AC<P<MR), 경쟁가격 주의, 부담력 주의(P<AC)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이원희, 「공기업론」, KOCW 공공기관관리론 강의를자료,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1/hankyung/public/06.pdf>, 검색일자: 2022. 12. 1.).

최저보험료는 사회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부과원리의 접점으로, 보험 가입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이다.

는 소득 등 가입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부과원리의 접점이 최저보험료이다. 최저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이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지위를 획득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입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건강보험의 가치(즉 혜택)를 수혜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적보험은 개인별 평균적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 사회보험은 연대성의 원칙을 감안하여 완전한 수지균형 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준에 대한 근거는 없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월 730.7만원으로 보험료 하한 월 19,500원의 374.7배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87.4배(19,500원 vs. 365.4만원)수준이다(<표 3>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개별 가입자에 포함된 피부양자 등 피보험자 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집계자료의 한계로 평균 수준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피보험자당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6.1만원으로 지역가입자 월 6.2만원과 거의 동일하다(<표 4> 참조).

한편 2020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8,600원/월, 지역가입자 13,980원/월

<표 3> 건강보험료 상·하한 변화 추이

(단위: 원/월)

구분	보험료 하한		보험료 상한	
	직장	지역	직장	지역
2018. 7.	17,460	13,100	6,193,140	3,096,570
2019. 1.	18,020	13,550	6,365,520	3,182,760
2020. 1.	18,600	13,980	6,644,340	3,322,170
2021. 1.	19,140	14,380	7,047,900	3,523,950
2022. 1.	19,500	14,650	7,307,100	3,653,550
2022. 9.	19,500	19,500	7,307,100	3,653,550

주: 이 고시는 2018. 3. 30. 제정하여 2018. 7. 1.부터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각 연도

<표 4>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2020년)

(단위: 천세대, 천명, 원/월)

구분	가입자(세대) 수	세대당 평균 보험료	적용인구 수 (피보험자)	피보험자당 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18,081	120,738	36,012	60,623
지역가입자	8,316	103,239	13,925	61,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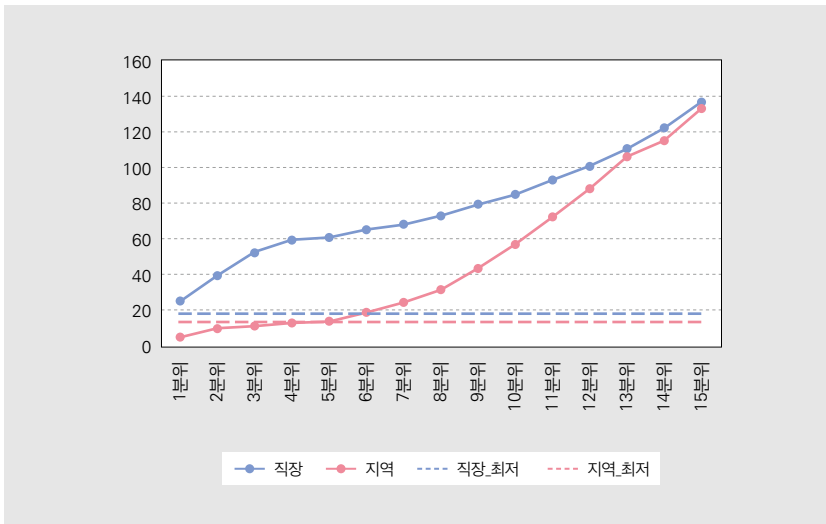
주: 피보험자당 평균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세대)에 포함된 피부양자, 가구 구성원 등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개인당 평균 보험료임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최저보험료보다 낮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기인한다.

[그림 4] 가입자 유형별·소득분위별 월평균 보험료(2020년)

(단위: 천원/월)



주: 1. 전체 20분위 중 1~15분위의 자료이며 직장가입자는 분위별 90.4만 세대, 지역가입자는 분위별 41.6만 세대 분포

2. 최저보험료(2020년 기준)는 직장가입자 18,600원/월, 지역가입자 13,980원/월임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준이다. 이는 가입자 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평균 보험료와 비교하였을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1분위(하위 5%)의 25,223원/월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4분위의 평균 보험료 13,980원/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즉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최저보험료보다 낮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sup>9)</sup>에 기인한다.

상·하위 소득계층 간 월평균 보험료의 격차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18.1배(45.8만원/2.5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79.9배(47.9만원/0.6만원)에 이

9) 심벽지 지역 경감(50%), 농어촌 경감(22%), 요양기관 이용 제한 지역 경감(20%), 세대 경감(10~30%), 재난 경감(30~50%), 사업장 화재 등 경감(30%) 등 다양한 계 존재(국회예산정책처, 2019)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세대별 보험료 구조와 유사하게 소득 하위 60%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고 소득 상위 40%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게 나타난다.

<표 5>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격차(2020년)

(단위: 만원/월, 배)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하위 5%, A)	2.5	0.6
평균 보험료(상위 5%, B)	45.8	47.9
보험료 격차(B/A)	18.1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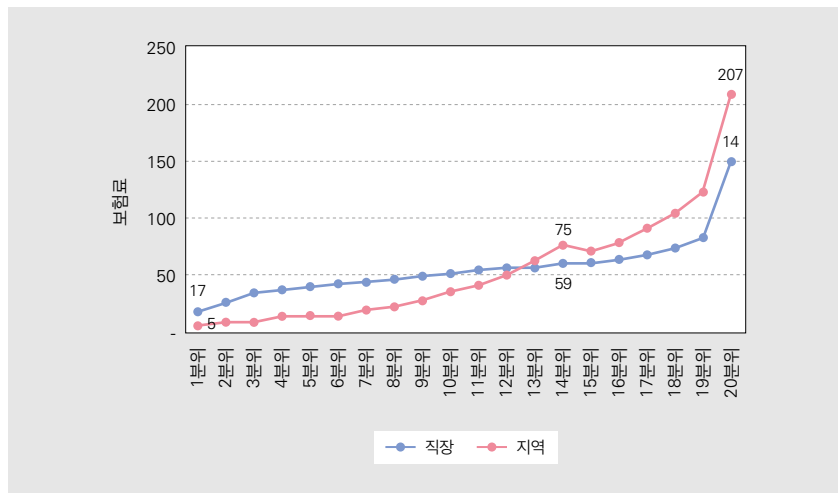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른다(<표 5> 참조). 이러한 보험료 격차는 건강위험을 제외한 소득 차이만 반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강위험과의 지나친 괴리는 제도 순응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상위 5%의 평균 보험료가 각각 45.8만원(직장), 47.9만원(지역)으로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하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에 기인한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은 실제 의료비용의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순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대별 보험료는 세대별 피보험자 숫자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1인당 월보험료로 전환하면 보다 정확한 비용 대비 평가가 가능하다. 세대별 평균 보험료를 적용인구 수로 나누면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5] 가입자 유형별 소득분위별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2020년)

(단위: 천원/월)



주: 1. 직장가입자는 분위별 90.4만 세대, 지역가입자는 분위별 41.6만 세대 분포  
2. 분위별 평균 보험료를 적용인구 수로 나누어 산정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 가입자 유형별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격차(2020년)

(단위: 만원/월, 배)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하위 5%, A)	1.7	0.5
평균 보험료(상위 5%, B)	14.9	20.7
보험료 격차(B/A)	8.8	44.1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역시 세대별 보험료 구조와 유사하게 소득 하위 60%에 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고 소득 상위 40%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 높게 나타난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적용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세대의 경우 1분위 1.7만원에서 점진적 으로 증가하여 20분위는 14.9만원에 달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1분위는 0.5만원, 7분위는 직장가입자 1분위와 유사한 1.8만원에 이른다. 13분위 이상의 계층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높은 수 준을 보이며 최고 소득계층인 20분위의 보험료는 20.7만원에 달한다.

피보험자 1인당 월보험료의 상·하위계층 간 격차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8배, 지역가입자는 44.1배로 세대당 보험료 격차에 비해 줄어든다(<표 6> 참조). 여 전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지나 치게 낮은 보험료 부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최저보험료의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의료비용 대비 보험료 비율도 중요한 최저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다. 전 체 평균적으로는 100%를 유지하여야 이 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내에서는 부담능력에 따라 이러한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러한 비율의 하한이 최저보험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보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보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 어야 하는지는 이론적으로 도출되기 어렵다. 보험이론에 따른 평균 비용부과와 사회보험으로서 부담능력 반영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는 각종 보험료 경감,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피보험자 1인당 보장률, 즉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율은 피보험 유형에 관계없이 75~76%로 유사한 것으

피보험자 1인당 월보험료의 상·하위계층 간 격차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 부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피보험자 1인당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율은 피보험 유형에 관계없이 75~76%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보험자 유형별 보험료 상·하한의 평균 비용 보전율(2020년)

(단위: 천원, 명, %)

피보험 유형	진료비(A)	급여비(B)	보장률(B/A)	보험료 상·하한(C)		비용 보전율(C/B)
				하한	상한	
직장	1,665	1,246	74.9	하한	223	12.0
				상한	25,878	2,076.3
지역	1,922	1,466	76.2	하한	168	9.0
				상한	17,262	1,178.8

주: 1. 진료비 및 급여비는 피보험자 1인당 금액이며, 보험료 상·하한은 피보험자 1인당 월 보험료의 연간 합계임  
2. 피보험자 1인당 월 보험료는 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금액을 소득 상위 5%, 하위 5%의 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추정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로 나타났다. 직장 피보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166.5만원의 의료비를 발생시켰으며 이 중 124.6만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로 충당되어 보장률 74.9%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 피보험자 1인당 보장률 76.2%와 유사하다. 그러나 총진료비는 지역 피보험자가 평균 199.2만원으로 약 15.5% 높은 수준이다(<표 7> 참조). 지역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나 의료 수요가 높은 계층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

보험료 하한을 납부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평균적인 비용 보전율(보험료 하한/급여비)<sup>10)</sup>은 직장, 지역 피보험자 각각 12.0%, 9.0%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통해 회수할 비용의 최소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험제도에서 다른 가입자로부터의 재분배기능으로 90%에 가깝게 조달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피보험자 유형별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비를 보이는 지역 피보험자 유형에 더 낮은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조정되어 이러한 피보험 유형별 격차는 완화되었다.<sup>11)</sup>

연령계층별 건강보험료의 비용 보전율로도 평가해볼 수 있다. 현재 부과체계는 연령에 따른 건강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환자 연령별 비용 보전율은 전반적으로 의료급여액이 높은 고령자의 비용 보전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피보험자들의 비용 보전율은 유형에 관계없이 10% 이하이며, 80세 이상에서는 3% 수준으로 낮아진다(<표 8> 참조). 즉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피보험자 비중이

10) 가입자당 보험료 하한을 피보험자당 보험료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료 하한을 소득하위 5% 가입자의 평균 피보험자 수(직장 1.49명, 지역 1.27명, 2020)로 나누었을. 가입자 유형별 피보험자당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를 전체 적용인구 수로 나눈 평균값임

11)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결정 시 높은 소득변동성에 대한 보험비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결정 시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단적 의료서비스 구매 제도인 건강보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므로 고려치 않음

<표 8> 피보험자 유형별·연령별 보험료 하한의 연간비용 보전율(2020년)

(단위: 천원, %)

연령구간	진료 실인원당 급여비		보험료 하한의 비용 보전율	
	직장	지역	직장	지역
0세	2,168	2,032	6.9	6.5
1 ~ 4세	682	552	21.9	23.8
5 ~ 9세	468	384	31.9	34.3
10 ~ 14세	361	321	41.4	41.0
15 ~ 19세	368	360	40.5	36.6
20 ~ 24세	425	401	35.2	32.8
25 ~ 29세	506	465	29.5	28.3
30 ~ 34세	670	605	22.3	21.8
35 ~ 39세	700	713	21.3	18.5
40 ~ 44세	732	808	20.4	16.3
45 ~ 49세	850	950	17.6	13.9
50 ~ 54세	1,054	1,146	14.2	11.5
55 ~ 59세	1,338	1,391	11.2	9.5
60 ~ 64세	1,725	1,691	8.7	7.8
65 ~ 69세	2,507	2,335	6.0	5.6
70 ~ 74세	3,164	2,911	4.7	4.5
75 ~ 79세	3,825	3,562	3.9	3.7
80 ~ 84세	4,341	4,093	3.4	3.2
85세 이상	4,855	4,589	3.1	2.9
전체	1,214	1,376	12.3	9.6

주: 1. 비용 보전율은 '피보험자당 최저보험료/진료 실인원당 급여비'임

2. 피보험자 규모와 진료 실인원 규모 불일치로 인해 전체 비용 보전율은 <표 7>과 차이를 보임

출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5세 이상 피보험자들의  
비용 보전율은  
유형에 관계없이  
10% 이하이며  
80세 이상에서는  
3% 수준으로 낮아진다.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고령 피보험자는 경제활동 참여도 어렵기 때문에 피부양자이거나 최저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지 불균형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10% 이하 수준의 비용 보전율은 최저보험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높인다. 최저보험료는 사회보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부담 방안이다. 강제가입이라는 사회적 제도이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위험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부담의 지나친 편중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 이하의 비용 보전율은 부담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건강보험 최저보험료에 대한 논의 결과는 편익과 비용부담의 지나친 격차를 막기 위한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 축

현재의 최저보험료는  
보험원리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비용 보전율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 등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 수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최저보험료 1.95만원/월(연 23.4만원)은 사회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91.4만원/월<sup>12)</sup>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보험원리, 즉 기대편익에 상응하는 비용부담 원리와 강제가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제도의 원리, 즉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리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두 원리의 상대적 반영 정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현재의 최저보험료는 보험원리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비용 보전율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반환자의 (의원급)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본인부담률은 30%(65세 이상은 비용총액에 따라 10%(1.5만~2.5만원), 20%(2만~2.5만원), 30%(2.5만원 초과 시))<sup>13)</sup>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부담하는 의료비용 비율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보험료 부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듯, 건강보험료 하한 역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 하한 결정에서 저소득계층의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낮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확보라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최저보험료에서의 고려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부담완화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비용부담 인식의 하락과 함께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고령화 추세 속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고령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주요 소득이라 할 수 있는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수입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연금급여 중 어떠한 부분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과제이다. 연금급여는 장기저축의 일종이므로 저축 형태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자 및

12)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안내」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10>, 검색일자: 2023. 1. 16.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과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로 환산되어 부과된다.

반면 연금은 부과대상을 공적연금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의 50%(2022년 8월까지 30%)만 부과대상 소득으로 한다. 다른 저축형태인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원은 소득기준의 연금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결정과정에서 사적연금액도 포함 하도록 요구하였다(연합뉴스, 2022).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그 결정논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정논리 없이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소득에 대해 일관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부과논리는 이미 암묵적·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부과 방지이다. 이는 저축 중 원금이 아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장기저축의 일종인 연금소득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결정논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부과논리는 이미 암묵적·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부과 방지이다.

<표 9> 저축 형태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저축 형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 여부		
		원금	이자 및 배당	양도소득
개인 투자(저축)		미부과	100% 부과대상	미부과
사적연금	연금저축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퇴직연금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공적연금		50%만 부과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중부과 방지의 관점에서 개인저축 원금의 경우 소득획득 단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sup>14)</sup> 이에 따라 원금이 아닌 이자 및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은 소득형성 기간이 다르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기여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후 소득의 일부를 다시 공적연금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분을 제외한 고용주 부담분만 소득획득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기여금 전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외 소득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도 존재하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현행 공적연금 소득의 50% 수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가입자의 공적연금 근원소득 중 건강보험 미부과 소득 비율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비율이나,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기여금 전액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소득이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적연금을 형성하는 근원소득의 50% 이상이 건강보험 기여금을 부담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소득의 비중은  $(\text{근로자 기여금} + \alpha \cdot \text{소득재분배 금액}) / (\text{근로자 기여금} + \text{고용주 기여금} + \text{소득재분배 금액})$ 으로 5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소득재분배 금액은 확정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이 약속하는 급여 중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주로 세대 간 재분배, 즉 미래세대 부담을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비중이 5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즉  $\alpha > 0.5$ 이다.<sup>15)</sup>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소득의 존재는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근거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소득 비중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보다 작다. 기여금 전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되며, 소득재분배 금액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기여금에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공적연금 소득의 50% 수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가입자의 공적연금 근원소득 중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 비율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비율이다. 향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금액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중부과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개인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넘나들면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구분하여 고려하기는 어렵다.

적립방식인 사적연금의 경우 그 유형과 가입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액 중 운용수익의 비중이 미부과 소득의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중은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고 짧아질수록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매년 납입하는 연금저축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전체 불입액의 평균 저축기간은 10년이 되고 이자율 3%를 가정하면 원리금 합계는 최초 불입액의 130.5%<sup>16)</sup>가 된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이 전체 소득의 23.4%(=30.5/130.5)에 불과하다. 개인의 주된 근로기간을 30~60세, 30년으로 가정하면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의 평균 불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기는 어렵다.

과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개인연금 가입기간의 차이 등을 감안한 개인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은 이중부과 방지의 관점에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라는 정책방향과 가입기

15)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의 비중이 직장가입자는 50%, 지역가입자는 100% 금액 비중이므로 두 유형의 평균은 50%를 초과하게 된다.

16)  $(1+0.03)^9 = 1.3048$

간에 대한 감안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면서 건강보험료 부담 관점에서 연금저축과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소득이다. 이중부과 방지 차원에서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 간 건강보험료 부과 의 형평성과 퇴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적 수령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는 동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금 형태의 해지유인을 높이기 때문이다.<sup>17)</sup> 이는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현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 소득의 경우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약 20% 수준이고, 퇴직연금은 거의 100%에 이른다.

<표 10> 연금소득의 근원별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

연금소득 유형	근원소득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
공적연금	근로소득(종합소득)	○
	고용주 기여금	×
	재분배 금액	○
연금저축	근로소득(종합소득)	○
	운용수익	×
퇴직연금	퇴직소득	×
	운용수익	×

주: 재분배 금액은 공적연금이 약속하는 연금액 중 기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세대 간 재분배, 즉 미래 세대의 기여금을 통해 조달됨

출처: 저자 작성

<표 11> 유형별 연금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중

연금소득 유형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의 비중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 소득 비중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가입자: 50% 미만(고용주 부담금/근로자 부담금+고용주 부담금+재분배 금액)</li> <li>지역가입자: 0%</li> </ul>	50% 미만
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용수익 비중(운용수익/(운용수익+저축액))</li> <li>* 20년 가입 시 평균 23.4%</li> </ul>	20% 이하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퇴직소득, 운용수익 모두 미부과)</li> <li>* 일시금과 선택적으로 운용</li> </ul>	100% (부과 시 계좌해지 가능성)

주: 재분배 금액은 공적연금이 약속하는 연금액 중 기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세대 간 재분배, 즉 미래 세대의 기여금을 통해 조달됨

출처: 저자 작성

17)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급여는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음


현재의 매우 낮은  
최저보험료 비용부담 비중은  
현 수준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연금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맺음말

본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 결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이행으로 인해 응익부담 원칙이 약해지고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다. 두 원칙의 상대적 역할 정도의 대리변수로서 최저보험료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의료비용 대비 최저보험료의 비율, 즉 비용 보전율의 정도가 응익부담 원칙의 최소 반영률이다.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최저보험료의 비용부담 비중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10% 내외,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6%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급격한 고령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절한 응익부담 원칙의 비중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수준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보험료 설정은 건강보험제도의 가격기능을 높이면서 발생가능한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는 실효성 측면에서 소액의 최저 건강보험료 조정보다 전반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를 이중부과 배제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즉 연금소득을 형성하는 소득근원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 공적연금 근원소득의 건강보험 미부과 소득의 비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50% 미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이중부과 회피 관점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적연금 소득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근원소득 중 건강보험 미부과 소득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난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약 20% 수준(20년 가입기준), 퇴직연금은 거의 100%에 이른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라는 정책방향과 가입기간을 감안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의 노후소득 확보 정책과 추가적 부담 시 계좌해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관리」, 보도자료, 2022. 2. 25.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2019.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각 연도.

\_\_\_\_\_,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보도자료, 2018. 6. 19.

\_\_\_\_\_,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2. 8.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10>, 검색일자: 2023. 1. 16.

이원희, 「공기업론」, KOCW 공공기관관리론 강의자료,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1/hankyung/public/06.pdf>, 검색일자: 2022. 12. 1.

『연합뉴스』,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피부양자 따질 때 반영 검토」, 2022. 7. 31.,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118700501>, 검색일자: 2022. 12.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02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ikang@kipf.re.kr

## I. 서론<sup>1)</sup>

시장조성자란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자발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이 여럿 존재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시장은 거래소가 직접 금융기관을 섭외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계약하는 지정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 이하 ‘DM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New York Stock Exchange(NYSE), 영국의 London Stock Exchange, 독일의 Xetra 등이 DM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전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빈도 거래자를 비롯한 내생적 유동성 공급자가 다수 있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과연 DMM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일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실증분석 결과들은 DMM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Clark-Joseph et al.(2017), Bessembinder et al.(2020) 등의 연구에서 NYSE의 DMM들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DMM들의 효과성은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보아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문헌에서는 DMM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 왜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 유동성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분

1) 본고는 논문 “Designated Market Makers are Even Better than You Think(Kang et al., 2022)”를 원고의 목적에 맞게 발췌 및 요약하여 소개함

석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거래마다 일정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조성자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시장조성자들은 거래를 증개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매수가-매도가의 차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증권거래세가 있을 경우 이러한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조성자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의 금융시장들은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조성자를 지정(DMM)하여 시장조성 활동으로 인한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지나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에서 DMM이 금융시장의 상태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DMM들이 금융시장 상태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효용이 증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DMM의 효과를 증폭시키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 II. DMM 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sup>2)</sup>

금융시장에서 시장조성자와 같은 유동성 공급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거래하는 거래자(정보 투자자)들과 거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비용이다. 유동성 공급자보다 미래 증권 가치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투자자들과의 거래에서는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sup>3)</sup> 이러한 정보비용을 수반하는 거래로 인하여 가격이 변하는 유동성 저하와 매도와 매수가격 간의 스프레드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idiosyncratic) 리스크에 대해 개별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유한하다는 점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제도적 또는 환경적 제한 요인으로 인하여 개별 기관이 다각화를 통하여 개별적인 리스크를 모두 해소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총칭한

본고는 한국에서 지정시장조성자(DMM)가 금융시장의 상태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고는 원고의 목적에 맞게 이론적 모형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더 엄밀한 이론적 결과가 공급한 독자는 Kang et al.(2022)을 참고하기 바람
- 3) 본고에서 지칭하는 거래 주체들인 정보 투자자,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유동성 거래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 특정한 투자자를 지칭하기 보다는 개별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거래자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 투자자란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투자자, 유동성 공급자는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자, 그리고 유동성 거래자는 여타 이유(헤징 등의 목적)로 인하여 거래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헤징의 필요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의 거래 행태가 헤징 필요성이 높은 유동성 거래자의 거래를 대표할 것으로 생각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DMM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시장조성자들의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정도의 제한을  
일부 개선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여력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개선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재고비용, 레버리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들,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DMM의 도입이 위 두 분류의 비용을 모두 경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상태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DMM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시장조성자들의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정도의 제한을 일부 개선한다. 이는 DMM이 추가되어 유동성 공급 부담을 분담하여 기존의 시장조성자들의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여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여력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개선한다. 일부 개선된 금융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헤징(hedging)을 목적으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유동성 거래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유동성 투자자들의 거래변동성 증가는 금융시장 유동성의 추가적인 증가를 유발한다. 그 이유는 유동성 투자자들의 거래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시장조성자들의 정보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거래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시장조성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동성 투자자와 거래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정보 투자자와의 거래에서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유동성 거래자의 거래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보이용 비용이 다시 경감되어 유동성이 또다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성립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보였다.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 및 거래변동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변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한 거래변동성의 증가는 오히려 DMM으로 인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개선효과가 더욱 큰 이유는 개별적인 리스크 수용 정도가 개선되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정보비용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거래로 인한 가격변화의 정도가 줄어들어 감소하는 효과와 더불어, 거래변동성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변동성의 증가가 더욱 클 경우에는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곧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에서는 DMM의 유동성 개선 및 변동성 증가 효과가 대체로 사전적 변동성이 높은 증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보인바 있다. 그 이유는 사전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증권들의 경우 거래의 한계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 개선으로 인하여 유동성 거래자의 거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거래자의 증가는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DMM의 도입이 모든 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개선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우수한 정보를 갖고 거래하는 정보 투자자들은 DMM 도입으로 유동성이 개선되어 거래에 따른 가격변화가 감소할 경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동성 투자자는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래 비용이 감소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헤징이 가능해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실증분석 방법론

본고는 앞서 설명한 이론적인 현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한국 유가증권시장(KOSPI)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는 2016년에 첫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DMM들은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종목을 배정받은 후 배정종목에 대하여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활동을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분석의 대상 기간인 2019년에는 특정 주식이 DMM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전율이 중간 이하의 값을 갖거나 유효스프레드가 중간 이상의 값을 가져야 했다. 즉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한하여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단, 2019년 이전까지 활용되었던 배정 자격 조건이었던 거래량 조건이 2019년 이후 회전율 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춘 증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춘 주식의 수가 기존의 82개에서 574개로 증가하였는데, 본 분석은 2018년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지 않았던 종목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장조성자

본고는 앞서 설명한 DMM 효과의 이론적 현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한국 유가증권시장(KOSPI)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7월부터 12월 사이의  
KOSPI 일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개의 유동성 지표와  
2개의 변동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가 배정되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고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7월부터 12월 사이의 일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3개의 유동성 지표와 2개의 변동성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유동성 지표로는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 체결률(Execution Rate), 그리고 비유동성 비율(Illiquidity Ratio)이 있다.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며, 작을수록 유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_{i,t} = 2 \times 100 \times \frac{ask_{i,t} - bid_{i,t}}{ask_{i,t} + bid_{i,t}} \quad \text{식 (1)}$$

체결률은 거래량을 신규 호가수량에서 취소 호가수량을 차감한 값으로 나눈 수치로 주문이 거래로 이어진 정도를 측정하며, 그 값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R_{i,t} = 2 \times 100 \times \frac{sharestraded_{i,t}}{orders\ submitted_{i,t} - orders\ canceled_{i,t}} \quad \text{식 (2)}$$

비유동성 비율은 가격변동률을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며, 거래로 인한 가격변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대수익률을 나타낸다. 비유동성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 활용하는 지표 중 제II장에서 설명한 모형 및 이론과 가장 부합하는 유동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ILLR_{i,t} = \frac{|R_{i,t}|}{total\ transaction\ value_{i,t}} \quad \text{식 (3)}$$

한편 분석에 사용한 변동성 지표로는 절대 수익률(Absolute Return, 이하 ‘AR’)과 일일 가격 변동성(Daily Price Amplitude, 이하 ‘DPA’)이 있다. AR은 변동성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중 하나로 일간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한다.

$$AR_{i,t} = |R_{i,t}| \quad \text{식 (4)}$$

DPA는 일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활용하여 하루 내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한다.

$$DPA_{i,t} = 2 \times 100 \times \frac{PH_{i,t} - PL_{i,t}}{PH_{i,t} + PL_{i,t}} \quad \text{식 (5)}$$

<표 1>은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기초통계량

구분	2018년		2019년	
	Mean	Std.	Mean	Std.
거래대금(만주)	32.0	68.1	32.4	101.3
증가원)	33,603	84,167	29,040	68,404
수익(%)	-0.121	0.201	-0.100	0.151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	0.398	0.190	0.371	0.165
체결률(%/100)	0.518	0.179	0.507	0.179
비유동성 비율(log)	-24.58	1.86	-24.53	1.74
일일 가격 변동성(%)	3.696	1.169	3.137	1.000
절대 수익률(%)	2.142	0.780	1.777	0.622
관측치 수	654			

출처: Kang et al.(2022), Table 1.

[그림 1]의 (a)는 분석 대상인 주식들의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보이고 있다. X축은 음(-)의 회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Y축은 유효스프레드를 나타낸다. 모든 값은 중앙값이 0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그래프에 표기하였으며, 그림에 표기된 모든 x는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지 않은 주식을 나타내며 붉은 점은 시장조성자가 배정된 주식을 대표하고 있다. [그림 1] (a)의 제3사분면에 있는 주식들은 유효스프레드와 회전이 모두 좋아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고유동성 종목으로, 제3사분면에 있는 주식들은 모두 시장조성자가 배정 자격이 없어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지 못한 종목들이다. 그 외의 주식들은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이 주어지나, 모든 주식에 반드시 시장조성자가 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a)를 살펴보면 회전율과 유효스프레드 지표의 중앙값 경계에서 주식의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성 지표로는 일간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절대 수익률과 일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활용하여 하루 내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는 일일 가격 변동성이 있다.

식 (6)에서  $x_i > 0$  경우  
 주식이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x_i < 0$  경우에는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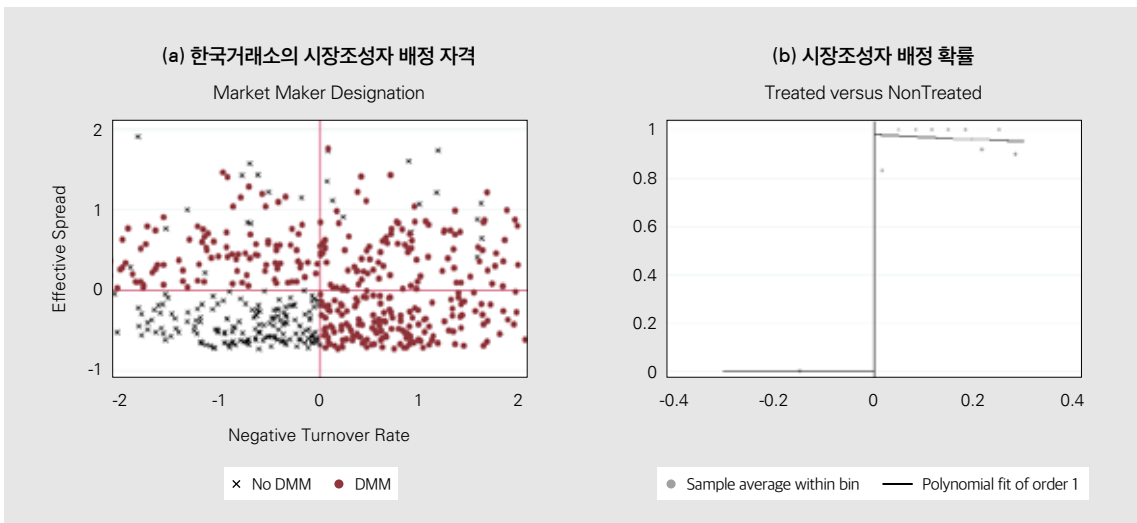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회귀단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 변수(running variable)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x_i \equiv \max \left\{ \log \left( \frac{0.4378}{turnover_i} \right), \log \left( \frac{spread_i}{2.11} \right) \right\} \quad \text{식 (6)}$$

참고로 식 (6)에서 활용한 0.4378과 2.11은 각각 회전율과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의 중앙값이다. 기준 변수  $x_i$ 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이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x_i$ 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장조성자 배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동성 등의 특성이 유사한 집단 간의 분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준점 주위의 주식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non-complier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fuzzy RD 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준점 주위의 최적 밴드값은 변수에 따라 0.212에서 0.334 사이의 값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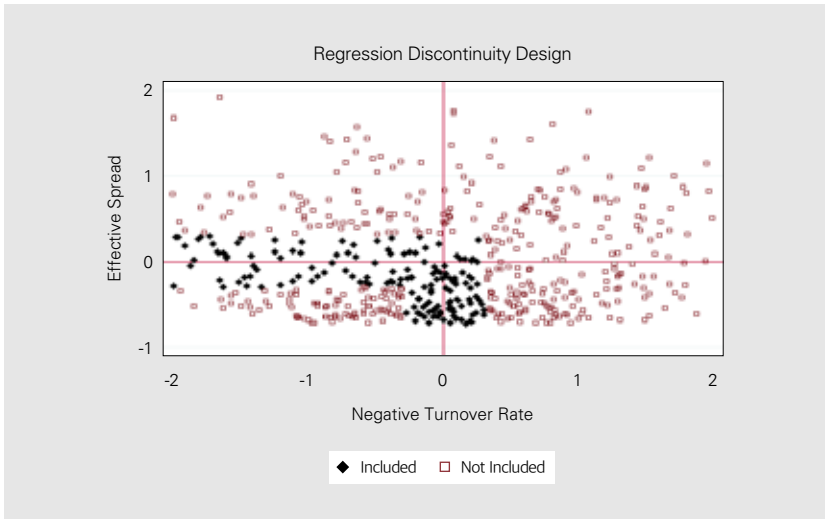
[그림 1]의 (b)는 기준점인  $x_i = 0$  주위로 시장조성자가 지정될 확률을 표기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x_i < 0$  경우에는 시장조성자가 배정될 확률이 0이며,  $x_i > 0$  경우 시장조성자 배정 확률이 1에 가까우나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분석에 활용되는 주식은 변수에 따라 최적 밴드의 차이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준점 주위로 [그림 2]

[그림 1] DMM 배정 자격



출처: Kang et al.(2022), Figure 1.

[그림 2] DMM 배정 주식



출처: Kang et al.(2022), Figure 2.

우리나라는 DMM 배정이  
주식 발행자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주식 발행자가  
DMM 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환경이므로  
DMM의 인과적 효과  
추정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처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밴드값 0.3 표기).

이러한 한국의 시장조성자 정책은 DMM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리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의 주된 우려사항 중 하나는, 해외 여러 사례에서 많은 경우 증권 발행자가 직접적으로 DMM과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 편의로 인한 내생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DMM의 배정이 주식 발행자와 무관하게 결정될 뿐만 아니라 주식 발행자가 DMM 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환경이다. 우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 DMM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유동성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다. 또한 2019년에는 기존의 거래량 조건이 회전율 조건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기업들이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도 내생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킨다.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해서 한국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 조건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평가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배정 기준 점이 중앙값으로 임의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로 인하여 유동성 조정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도 분석에 유리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MM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y_i = \alpha + \beta treat_i + f_1(x_i) + D_i \cdot f_2(x_i) + \Gamma Z_i + \epsilon_i \quad \text{식 (7)}$$

[그림 3]을 보면  
 거래대금의 경우  
 기준점을 전후로  
 DMM 배정여부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의 경우 DMM 배정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가격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y_i$ 는 유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 등의 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변수이며,  $treat_i \in \{0, 1\}$ 는 DMM 배정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D_i \in \{0, 1\}$ 는 DMM 배정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나아가 위 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  $D_i$ 를  $treat_i$ 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f_1, f_2$ 는 2차 함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Z_i$ 는 2018년 7월부터 12월 사이 평균값을 변수들 (transaction volume, closing price, return, illiquidity ratio, execution rate, bid-ask spread, absolute return, daily price amplitude,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별 더미를 포함하였다.

나아가 증권의 사전변동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고변동성 종목과 저변동성 종목으로 분류한 후 DMM 효과의 이질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Becker et al.(2013)과 Chakravarty et al.(2019) 등에서 활용한 교차항을 포함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주식 종목을 각각 DPA와 AR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산업별로 고변동성과 저변동성 종목으로 나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다음 회귀식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정하였다.

$$y_i = \alpha + \beta treat_i + \beta_1 LV_i + \beta_2 (treat_i \times LV_i) + f_1(x_i) + D_i \cdot f_2(x_i) + \Gamma Z_i + \epsilon_i \quad \text{식 (8)}$$

$LV_i \in \{0, 1\}$ 는 저변동성 종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 IV. 실증분석 결과

[그림 3]은 분석에 활용된 각 변수들이 기준점 주위에서 DMM 배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거래대금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격의 경우 DMM 배정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가격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성 지표의 경우 모두 DMM 도입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호가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결률은 증가하고 비유동성 비율은 감소하였다. 변동성 지표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 DMM 배정 효과



출처: Kang et al.(2022), Figure 3.

가격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약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의 효과는 저변동성 종목에서는 일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앞선 식 (7), (8)을 사용하여 DMM 도입으로 인한 각각의 지표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에 앞서 이론에서 도출된 경험적 예측(empirical prediction)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형에 의하여 ① DMM의 도입은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측되며 ②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동성 역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또한 DMM의 도입으로 인한 유동성과 변동성의 증가 모두 사전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는 DMM의 도입이 거래대금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대금의 경우 [그림 3]에서와 같이 뚜렷한 예측도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

<표 2> DMM의 도입이 거래대금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구분	거래대금			가격		
	(1) Overall	(2) Subgroup (AR)	(3) Subgroup (DPA)	(4) Overall	(5) Subgroup (AR)	(6) Subgroup (DPA)
DMM	0.080 (0.388)	0.154 (0.355)	0.106 (0.370)	0.440* (0.232)	0.463** (0.228)	0.505** (0.211)
DMM × LowAR		-0.276 (0.274)			-0.196 (0.125)	
DMM × LowDPA			-0.074 (0.263)			-0.147 (0.104)
관측치 수	162	162	162	141	141	141
밴드값	0.275	0.275	0.275	0.235	0.235	0.235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Kang et al.(2022), Table 2.

<표 3> DMM의 도입이 유동성 지표에 미친 효과

구분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			체결률			비유동성 비율		
	(1) Overall	(2) Subgroup (AR)	(3) Subgroup (DPA)	(4) Overall	(5) Subgroup (AR)	(6) Subgroup (DPA)	(7) Overall	(8) Subgroup (AR)	(9) Subgroup (DPA)
DMM	-0.096** (0.046)	-0.109*** (0.038)	-0.085** (0.038)	0.139* (0.074)	0.148** (0.072)	0.157** (0.068)	-0.449 (0.309)	-0.621* (0.324)	-0.579* (0.347)
DMM × LowAR		0.020 (0.049)			-0.065 (0.049)			0.424 (0.260)	
DMM × LowDPA			-0.022 (0.038)			-0.043 (0.048)			0.229 (0.263)
관측치 수	133	133	133	149	149	149	203	203	203
밴드값	0.222	0.222	0.222	0.241	0.241	0.241	0.334	0.334	0.334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Kang et al.(2022), Table 3.

다. 가격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약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가격 상승의 효과는 저변동성 종목에서 일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점 추정치는 가격의 증가가 약 15~20%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유동성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유동성 개선으로 인하여 유동성 프리미엄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하여, power의 문제로 인하여 교차항 추정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변동성에서 가격 상승이 경감되는 효과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시될 유동성과 변동성 교차항 결과들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DMM의 효과가 고변동성 종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은 DMM의 도입이 유동성 지표에 미친 효과를 나타낸다. DMM의 도입은 유동성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9.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결률은 약 14%p 증가하였다. 비유동성 비율은 약 45% 감소하였다. 또한 유동성 개선 효과는 대체로 고변동성 종목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론 분석에서 사용한 유동성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유동성 비율의 경우 고변동성 종목은 분석에 따라 62%, 또는 58% 감소하였다. 반면 저변동성 종목의 교차항은 AR을 기준으로 주식을 구분하였을 때 그 경감 효과가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DPA 기준으로 주식을 구분할 경우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항의 경우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앞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교차항의 크기와 방향성이 이론 분석과 다른 실증분석 결과들과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표 4>는 DMM의 도입이 변동성 지표에 미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DPA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약 0.6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R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0.64%p 증가하였다. 이질성 분석 결과는 앞서 가격과 유동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고변동성 종목에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DPA의 경우 고변동성 종목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0.77~0.88%p 증가하는 반면, 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그 효과가 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의 경우 고유동성 종목은 DMM의 도입으로 0.63~0.70%p 증가하는 반

<표 3>을 보면

DMM의 도입은 유동성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유동성 비율은 약 45%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DMM이 가격, 유동성,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DMM의 도입은  
유동성 거래자의  
거래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DMM의 도입이 변동성 지표에 미친 효과

구분	거래대금			가격		
	(1) Overall	(2) Subgroup (AR)	(3) Subgroup (DPA)	(4) Overall	(5) Subgroup (AR)	(6) Subgroup (DPA)
DMM	0.663*** (0.248)	0.769** (0.242)	0.877*** (0.254)	0.643*** (0.117)	0.634*** (0.108)	0.697*** (0.113)
DMM × LowAR		-0.407** (0.196)			-0.151 (0.108)	
DMM × LowDPA			-0.404** (0.203)			-0.157 (0.121)
관측치 수	178	178	178	129	129	129
밴드값	0.298	0.298	0.298	0.212	0.212	0.212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Kang et al.(2022), Table 4.

<표 5> 투자자 유형에 따른 거래량과 거래대금 및 전체 거래 대비 비중

Panel A: 주식거래량

구분	2018년		2019년	
	주식수(만개)	비중(%)	주식수(만개)	비중(%)
개인투자자	80.01	80.51	102.60	83.74
증권사	1.61	1.62	2.25	1.83
사모펀드	1.05	1.05	0.63	0.52
공모펀드	1.11	1.12	0.84	0.69
보험회사	0.55	0.55	0.38	0.31
연기금	2.00	2.02	1.79	1.46
외국인 투자자	12.12	12.19	12.98	10.60
은행	0.07	0.07	0.04	0.03
기타 투자자	0.85	0.86	1.01	0.83
합계	99.38	100.0	122.52	100.0

Panel B: 거래 대금

구분	2018년		2019년	
	금액(만원)	비중(%)	금액(만원)	비중(%)
개인투자자	627,021.30	58.20	469,474.80	59.62
증권사	45,883.96	4.26	45,592.53	5.79
사모펀드	29,880.99	2.77	13,571.07	1.72
공모펀드	31,645.75	2.93	19,063.21	2.42
보험회사	17,038.98	1.58	9,696.39	1.23
연기금	65,742.24	6.10	47,380.41	6.02
외국인 투자자	244,595.60	22.70	174,160.70	22.12
은행	2,110.10	0.20	761.78	0.10
기타 투자자	13,472.03	1.25	7,765.80	0.99
합계	1,077,390.95	100.0	787,466.70	100.0

출처: Kang et al.(2022), Table 5.

면 저유동성 종목에서는 그 효과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M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격, 유동성, 변동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효과들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MM의 도입은 유동성 거래자의 거래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투자자 유형별 거래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헤징 거래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거래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거래변동성에 뚜렷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헤징 거래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투자자로는 대표적으로 공모펀드, 사모펀드, 보험회사, 은행 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별 거래대금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의 거래대금의 표준편차와 2019년 하반기의 거래대금의 표준편차의 로그값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DMM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fuzzy RD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는 분석에 활용된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거래량과 거래대금 및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거래변동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1) 개인투자자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 사이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모두 거래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증권사의 경우 역시 헤징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투자자나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이에 포함되어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7)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체로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인 개인투자

개인투자자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모두 거래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거래변동성 변화

구분	(1) 개인 투자자	(2) 증권사	(3) 사모펀드	(4) 공모펀드	(5) 보험회사	(6) 연기금	(7) 외국인 투자자	(8) 은행	(9) 기타 투자자
DMM	-0.188 (0.799)	1.240 (0.781)	2.240** (0.901)	1.504 (0.931)	0.885 (0.852)	1.020 (0.796)	0.597 (0.403)	3.425*** (1.237)	1.330 (0.977)
관측치 밴드값	179 0.305	210 0.341	151 0.248	158 0.265	124 0.213	171 0.311	222 0.349	88 0.306	163 0.277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Kang et al.(2022), Table 6.

DMM 도입으로 인한 거래변동성의 증가는 유동성 거래자의 경우 고변동성 종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도 포함되어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모펀드의 경우 거래변동성이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2.2 표준편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 기타 투자자의 경우 거래변동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DMM이 거래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의 이질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DMM 도입으로 인한 거래변동성의 증가는 유동성 거래자의 경우에는 고변동성 종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선 (2)~(8) 사이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고변동성 종목은 모두 거래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변동성 종목에 대한 교차항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추정되었다. 이는 종목을 구분하는 사전변동성 지표로 AR과 DPA를 사용할 때 각각 모두 같게 나타났다. 예컨대 Panel B의 공모펀드 결과를 살펴볼 경우, 고변동성 종목의 경우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거래변동성이 2.8 표준편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저변동성 종목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1.3 표준편차 만큼 감소하여 약 1.5 표준편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1) 개인투자자와 (9) 기타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할 경우, 이론분석에서 제시한 채널이 실제로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DMM이 거래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의 이질성 분석 결과

구분	(1) 개인 투자자	(2) 증권사	(3) 사모펀드	(4) 공모펀드	(5) 보험회사	(6) 연기금	(7) 외국인 투자자	(8) 은행	(9) 기타 투자자
Panel A : subgroups based on absolute return									
DMM	-0.115 (0.715)	1.621* (0.889)	2.340** (0.980)	1.422 (0.870)	1.221 (0.843)	1.071 (0.843)	0.832** (0.386)	3.763*** (1.069)	0.672 (0.767)
DMM × LowAR	-0.134 (0.562)	-0.942** (0.471)	-1.136 (0.882)	-0.300 (0.534)	-1.311** (0.533)	-0.381 (0.619)	-0.551 (0.402)	-0.705 (0.650)	1.246* (0.685)
관측치	179	210	151	158	124	171	222	88	163
Panel B : subgroups based on daily price amplitude									
DMM	-0.546 (0.686)	1.897** (0.932)	2.788*** (1.054)	1.622** (0.774)	1.437* (0.868)	1.140 (0.948)	0.608* (0.323)	3.110** (1.562)	0.833 (0.746)
DMM × LowDPA	0.653 (0.430)	-1.077** (0.480)	-1.292** (0.652)	-0.274 (0.623)	-1.493*** (0.484)	-0.225 (0.626)	-0.045 (0.352)	-0.013 (0.825)	1.029* (0.610)
관측치	179	210	151	158	124	171	222	88	163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Kang et al.(2022), Table 7.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의 분석 결과 DMM은 금융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M은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M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금융시장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DMM의 도입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MM들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DMM의 지정과 활동은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DMM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종합적으로 세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강동익 외, 2020). DMM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세수가, 직접적인 세수 감소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하여 생각할 경우 DMM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 역시 다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DMM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동익·고창수·박종상,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 거래에 면제』, 기획재정부, 2020.

Becker, Sascha O., Peter H Egger., and Maximilian von Ehrlich, “Absorptive Capacity and the Growth and Investment Effects of Regional Transfers: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with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4), 2013, pp. 29~77.

Bessembinder, Hendrik, Jia Hao, and Kuncheng Zheng, “Liquidity Provision Contracts and Market Quality: Evidence from the New York Stock Exchang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3(1), 2020, pp. 44~74.

Chakravarty, Shubha, Mattias Lundberg, Plamen Nikolov, and Juliane Zenke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Youth Labor Market Outcomes: Evidence from Nepal,”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6, 2019, pp. 71~110.

Clark-Joseph, Adam D., Mao Ye, and Chao Zi, “Designated Market Makers Still Matter: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6(3), 2017, pp. 652~667.

Kang, Dongik and Ko, Changsu and Park, Jongsang, “Designated Market Makers are Even Better than You Think,”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888886>, 2022.

# 정책토론키포트

+ 2023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회의



## 2023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회의

### 개요

- 주 제 Making the Treasury More Efficient and Accountable to Enhance Service Delivery
- 일 시 2023년 1월 18일 (수) ~ 19일 (목)
- 장 소 태국 방콕
- 주 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 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2022년 9월 서울에서 3년 만의 대면 행사로 총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22년 11월 예산분과 회의에 이어 2023년 1월 국고회계분과 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함

- 이틀 동안 진행된 본 회의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고국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음

## DAY 1

1월 18일(수)

### Opening Session

#### Opening Remarks I

#####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Alma Kanani(세계은행)는 개회사를 통해 회의 주제의 시의적절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본 회의를 통해 각국의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에서 비롯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부의 역할은 커지고 있음
- 발생주의 회계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부 재무자료 작성에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정확한 회계정보에 기반한 재무보고와 정부계정의 관리는 각국 재무부의 중요 이슈임
- 정보화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변환과 개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도입 정도와 발달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각국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임

#### Opening Remarks II

##### •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 (The Philippines)

■ PEMNA 국고회계분과 의장 대리 Eduardo는 개회사를 통해 2022년은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등의 도전에 직면한 한해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각국의 재무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난 재정수요의 관리와 이자율 상승 등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운영과 통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개혁을 시행하는 한편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음
  - 발생주의 회계는 새로운 국제기준이 되었으며, 현재 많은 국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임
  - 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은 중요한 이슈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도입 경험의 공유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임

나눌 수 있으며, 도입개혁 방안은 점진적 방식과 빅뱅 방식으로 나뉨

-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 운영위원회 구성, 도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평가, 도입 초기 법률 제정, 다년에 걸친 예산과 인력의 책정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함
  -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국가들은 인력양성과 역량강화, 기술과 인프라의 부족과 제한적인 데이터, 개혁시행에 따른 비용, 국내와 국제기준의 상충 상황과 제도적인 저항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음
  - 이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와 개혁에 대한 의지, 실행전략에 대한 합의, 자원과 인력의 확보, 시의적절한 법률제도의 도입 등을 권장

## Session 1. Implementing Accrual Based Accounting

### - Lessons learned and experiences

#### Presentation 1

• Dmitri Gourfinkel (The World Bank)

- 발생주의 회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본 발표는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교훈을 제시함
  - 발생주의 회계를 국제공공회계 기준으로 도입하는 접근방식은 직접 도입과 간접 도입으로

#### Presentation 2

• Ian Carruthers (IPSASB)

- 국제 공공 부문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공재정관리 부문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표준을 강화시키고 국제공공회계 기준 도입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워크플랜을 도입하였음
  - 전 세계 발생주의 회계 도입국가는 2020년 30%에서 2030년에는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적인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혁의 맥락에서 거버넌스, 공공재정관리 프레임워크, 전략 도입, 역량강화, 회계기준과 정책, 개별단위 이슈 등을 고려해야 함

- 공공재정관리는 재원을 계획·지시·제어하여 공공서비스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강력한 공공재정관리는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며 이는 발생주의 회계와 함께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함

있음

- 한국의 dBrain+는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를 모두 통합하고 있으며, GFSM 2001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음

### Presentation 3

• Sung Jin Park (KIPF)

- 한국은 지방분권주의로, 지방정부에서 먼저 발생주의를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2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한 보고를 시작하고 IFRS를 도입하였음
- 한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회계법에 의거,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이관됨
- 또한 2007년부터 통합된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재정의 전 과정을 통합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최근 들어 향상된 새로운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의 운영을 시작함
- 이를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는 한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 Presentation 4

• Ty Mao (Cambodia)

- 캄보디아는 발표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의 점진적 도입을 목표로 한 2033년까지의 액션플랜을 소개하였음
- 캄보디아는 개혁에 필요한 법, 제도, 인력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매우 장기간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각 부문 간의 조화가 관건이라 밝힘
- 현재 캄보디아는 현금주의 회계를 실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정된 현금주의, 2028년부터 2030까지 수정된 발생주의, 2033년까지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Presentation 5

•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2014년 IPSAS와 조화를 이룬 필리핀 공공회계기준인 PPSAS를 채택하고 2016년부터 정부회계매뉴얼(Government Accounting Manual, GAM)을 도입하는 한편 2017년에는 정부회계시스템인 NNGAS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현금주의 회계로,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음

-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보고서는 정책입안자나 투자자, 채권자 및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현금 지급 시기 및 채권 발행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세수추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정부계획의 연속성, 변화 관리와 인력개발, 사전적 리스크 관리, 적절한 제어를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중요 요소로 언급함

## Session 2. Risk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 Treasury

### Presentation 1

#### • Mark Ivor Silins (The World Bank)

- 내부통제가 수동화되고 중앙 집중화되었던 과거에서 탈피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재무부는 관리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디지털화하는 한편,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정부는 내부통제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스템과 절차를 보장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나 기후변화와 같은 범세계적 문제의 증대와 복잡성 증대로 인해 정부의 위

험관리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적합한 관리방안 선택,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함

- 각국의 재무부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모든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ICT를 비롯한 효과적인 현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Presentation 2

#### • Kusumo Adi Wibowo (Indonesia)

-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신흥국 자본흐름의 역전, 투자 감소, 부채비용 증가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과 물가상승률의 통제, 무역수지 흑자와 성장세 지속으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의 최적화, 지출통제 및 목표 설정,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해 상품유통망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조세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세의 탐색, 납세 의식 제고,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의 강화, 법적 여건과 정보화 여건의 개선 등을 시행 중이며, 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금 관리와 예산흑자 관리, 생산 부문의 투자조달, 채권발행 조정 등을 시행함

### Presentation 3

#### • Tuan Dung Nguyen (Vietnam)

- 베트남 국고국은 2030년까지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지출의 통제와 지급의 처리기능을 현대화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화 및 정보화, 법률 및 정책제도의 개혁,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 베트남의 예산과 지출,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화되어 99% 이상의 문서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지불기능 역시 자동으로 시행 가능해짐
  - 베트남 국고국은 1990년부터 감사 및 통제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200건의 감사를 시행하고 온라인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지연과 거절이 감소된 한편 부문별 검사기능이 도입됨
  - 향후 내부감사와 외부감독, 예산지출의 사후 통제 전환, 이행 및 지급처리의 전자화 등에 대한 개혁을 계획 중임

### Presentation 4

#### • Sujin Park (Korea)

- 최근 5년 동안 급격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겪은 한국은 재정수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고국 리스크 관리와 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재정준칙, 중기재정계획, 재정비전 2050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 한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범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의 60%를 넘을 경우 2% 이내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 관리계획을 밝힘

- 한편, 5개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12개 부문의 예산 배분 계획을 담고 있으며, 2022~2026년 기간 동안 가장 큰 예산이 할당된 부문은 보건·복지·고용, 행정 및 지방정부, 교육 부문의 순서로 나타남
- 한국은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 낮은 출산율, 고령화, 기후변화, 연금개혁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준비 중임

## DAY 2

1월 19일(목)

### Session 3. Working Group – Reflection of Day 1

- 몽골은 2028년 이후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예정이며 계정의 분류가 가장 난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으며,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수가 많아 예측(projection)에 난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베트남은 재무보고·수정과 정보수집 측면에서 어려움을, 라오스는 데이터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필리핀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완료하였으

며 전 부처가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모니터링 및 분석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Session 4. Implementing the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FMIS) - Lessons learned and experiences

### Presentation 1

#### • Khuram Farooq (The World Bank)

-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예산과 현금관리, 국고관리의 효율성과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높이며, 성공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 TSA, 예산분류, 지불처리 방식, 재무보고 방식, 개혁방식, 인력 등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성숙단계의 재정정보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인터페이스와 디지털화의 달성, 예산준수, 표준화된 예산과 계정의 분류,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에 기반한 재무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높은 투명성 등의 특징을 갖춘 통합 재정시스템(IFMIS)이며, PEMNA 지역의 경우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입사례의 분석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외에도 기술의 보완, 적

합한 사례의 도입, 통합 및 적용 범위 개선을 통한 효과 극대화, 정치경제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 Presentation 2

#### • Sanghee Woo (KFIS)

- 한국은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를 소개하였으며, 이는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AI를 이용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고 밝힘
  - dBrain+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써 재정연계시스템, 열린재정정보시스템, 재정업무관리시스템, 재정분석시스템의 네 가지 시스템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함
    - dBrain+는 하루에 약 120억달러의 지출과 70억달러의 수입을 처리하고 있으며, 총사용자는 51,466명에 달함
  - 한국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전담기관으로 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컨설팅 서비스와 시스템의 수출도 진행하고 있음
    - 운영본부는 서울, 데이터센터는 대전, 재해복구센터는 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dBrain+의 24시간 365일 가동을 지원함

### Presentation 3

#### • Sereymongkol Hout (Cambodia)

- 캄보디아는 2004년 시작된 공공재정관리개혁 프로그램(PFMRP)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 완전한 시스템인 V2 사용을 목표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사용 중인 재정정보포털시스템은 2022년 구축된 V1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디지털화하였으며 75개 지역, 185개 코뮌에서 452명이 사용 중임
    - 2023년에는 사용자를 확대시켜 500개의 장소(지역과 코뮌 포함)에서 운영할 계획임
  - 캄보디아는 자국의 FMIS 운영 경험을 통해 인적자원의 새로운 기술 적용, 구식 FMIS 시스템의 한계,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도전 요소로 언급하였음

### Presentation 4

#### • Nor Fadhilah Binti Ibrahim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SAP ECC를 기반으로 구축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iGFMAS를 2018년부터 사용 중이며, 발생주의와 수정현금주의를 함께 사용하고 111개 기관과 통합되어 있음
  - 연방정부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채택이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방정부 회계처리하는 수정현금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주 원장은 발생주의 회계, 보조원장은 수정현금주의로 운영

- 말레이시아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중앙 집중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조이며 기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SAP를 개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부처 및 외부기관 간 협업과 리소스 플래닝을 원활히 진행한 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음
- 한편, 관련 법규 제정이나 시스템 적용의 연기, 데이터 이전의 어려움, 보안 문제와 속도, 새로운 기능의 적용과 인력양성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됨

### Presentation 5

#### • Tokbayev Rakhat Keldibayevich (Kazakhstan)

- 카자흐스탄은 발표를 통해 자국의 재무부와 예산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재무부의 주요 성과로 단일국고계정(Single Treasury Account)의 개설,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과 새 시스템으로 전환, 재무제표통합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자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소개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국고통합정보시스템(IIST)과 클라이언트 정보시스템(ISK2)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힘
    -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고통합정보시스템인 IIST는 카자흐스탄의 국가기금(National Fund)과 지방예산의 집행 절차와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부처, 189개 지역 재무부에서 2,460여 명이 사용하고 있음

- 클라이언트 정보시스템인 ISK2는 재무 기능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제출된 문서의 접수와 처리, 보고서 제출 등의 기능을 약 15,000여 개에 이르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Session 5. Working Group – Reflection of Day 2

- 회원국들은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발표를 통해 이중 원장의 운영, 계정과 정책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의 조정과정, 시스템 통합과정에서 발행하는 문제, 보안 이슈 등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번 회의가 자국의 재정정보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인도네시아는 현재 SPAN이라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빅데이터의 복잡성, 지방정부와의 연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IT시스템의 개선 등을 한계점으로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dBrain+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언급하였음
  - 동티모르는 발생주의 회계와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준비 중이나 전문인력 부족 및 정권 변화에 의한 우선순위 변경 등을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으며, 캄보디아는 로드맵을 따르기 위한 노력을 밝힌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고 밝힘

## Closing Session

### Closing Remarks

#### • Kyongsun Heo (KIPF)

- 허경선 센터장은 국고회계분과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회의를 가능하게 한 주최 측과 후원 측, 발표자와 사회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향후 PEMNA 후속 회의 개최 시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국세청, 환경세 신고 지침 발표]

■ 미국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0일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신고 지침을 발표함<sup>1)</sup>

- 미국 내 원유 및 화학물질, 수입 석유 및 화학물질,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ODC)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및 재고에 대한 세금 부과 지침
  - 지침은 각 화학물질(ODC 제외)에 대한 세율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는 내국세법에 새로 복원(reinstated)된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부과 정보가 제공됨

- 2022년 7월 1일 발효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ODC를 제외한 화학물질에 대해 내국세법 섹션 4671의 세금을 복원하였음
  - 내국세법 섹션 4671은 섹션 4661에서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부과 세액을 준용하고 있음

<표 1> 복원된 화학물질에 대한 부과 세액 중 일부

화학물질 종류	톤당 부과 세액(USD)
아세틸렌	9.74
벤젠	9.74
에틸렌	9.74
메탄	6.88
염소	5.40
니켈	8.90

출처: 미국 내국세법 섹션 4661조

-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미국 정유소에서 받은 원유 및 소비·사용 또는 보관을 위해 미국에 반입된 석유제품에 대하여 내국세법 섹션 4611의 석유 슈퍼펀드 세율(petroleum Superfund tax rate)을 복원하였음
  - 석유 슈퍼펀드 세율은 유해 물질 슈퍼펀드 자금 요율 및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 조달 요율의 합계로 산출함
  - 위험물질 슈퍼펀드 자금 요율은 배럴당 16.4센트임
  -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 조달 요율은 2017년 1월 1일 이전 반입된 경우는 배럴당 8센트, 2016년 12월 31일 이후 입고된 경우는 배럴당 9센트임
- ODC에 대한 내국세법 섹션 4681의 세율은 2023년 중 인상이 예고되어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1) IBFD, “IRS Releases Instructions for Filing Environmental Taxes,” 2023.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0\\_us\\_5.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0_us_5.html), 검색일자: 2023. 1. 17.



## 캐나다

### [재무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조치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22년 12월 21일,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를 위해 2022년 가을 경제 성명서의 주요 조치가 담긴 Bill-32의 시행을 발표함<sup>2)</sup>

- 소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기존 15%에서 9%로 인하함
- 은행 및 생명보험사 그룹의 10억캐나다달러<sup>3)</sup> 이상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함
- 은행 및 생명보험사 그룹의 1억캐나다달러<sup>4)</sup>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5% 인상함
- 2023년 중반부터 비과세 첫 주택 저축계좌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신설  
-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계좌납입액 중 최대 4만캐나다달러<sup>5)</sup>에 대해 비과세할 예정임
- 2023년 1월부터 최대 7,500캐나다달러<sup>6)</sup>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개조 공제가 신설됨
- 2023년부터 부동산을 12개월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100%에 대해 양도

세를 적용하게 됨

- 다만 특정 예외적인 사건(사망, 이혼)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전액 과세 원칙의 적용이 면제됨
- 캐나다는 부동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해 오고 있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 영국

### [이전가격 관련 자료보관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영국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 이전가격 관련 자료 보관(Transfer Pricing Records Regulations 2023)’ 규정안(draft)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음<sup>7,8)</sup>

- 규정안에 따라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은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보관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금번 규정안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

2) IBFD, “Canada Enacts Inflationary Relief: Cuts Taxes for Small Businesses, Eliminates Federal Student Loan Interest, Imposes New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ax,” 2022. 12.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1\\_ca\\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1_ca_2.html), 검색일자: 2023. 1. 17.

3)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39억 3,000만원임

4)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3억 9,300만원임

5)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5만 7,200원임

6) 2023년 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2만 9,700원임

7) HMRC, “Draft regulations: The Transfer Pricing Records Regulations 2023,” 2022. 12. 21.,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raft-regulations-the-transfer-pricing-records-regulations-2023>, 검색일자: 2023. 1. 16.

8) IBFD, “United Kingdom-Tax Authority Publishes Draft Transfer Pricing Record-Keeping Legislation, Seeks Public Input,” 2022. 1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uk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률은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에 수반된 각 절차를 포함하는 요약 감사 추적(Summary Audit Trail: SAT)을 구비해야 함

- 요약 감사 추적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되지 아닐 것임

■ 의견 수렴 절차는 2023년 1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프랑스

#### [DAC7 관련 시행령 입법 및 지침 발표]

- 프랑스는 2022년 12월 28일, DAC7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세일반법」 제1649terA조의 구체적인 절차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 시행령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의무를 위한 절차 내용을 규정함<sup>9)</sup>
    -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된 제3자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은 플랫폼 운영자의 신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각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의 신원(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EU 회원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추가 정보) 등임

-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프랑스는 EU DAC7을 「조세일반법」 제1649terA조로 입법하였음<sup>10)</sup>
  - DAC7은 EU 과세행정협력지침(2021/514)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를 다루고 있음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침을 내국 법령으로 입법할 의무가 있었음
  - 「조세일반법」 제1649terA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1일, 플랫폼 운영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sup>11)</sup>
  - 지침은 DAC7 규정의 범위, 플랫폼 운영자들의 보고에 적용되는 적법절차, 플랫폼 운영자들의 보고에 적용되는 의무, 보고 절차를 명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음
  -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보고 의무를 이행한 회원국을 프랑스 과세관청에 통지하고, 프랑스 내에서 이뤄진 영업 활동을 등록하기 위하

9) Légifrance, “Décret n° 2022-1661 du 26 décembre 2022 relatif aux obligations déclaratives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s de mise en relation par voie électroniqu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820108>, 검색일자: 2023. 1. 25.; IBFD, “France Issues Details on DAC7 Declaration,” 2022. 1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8\\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8_fr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10) EUR-Lex, “Council Directive (EU) 2021/514 of 22 March 2021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21L0514>, 검색일자: 2023. 1. 25.

11) BOFIP, “INT-Accords et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Obligations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de mise en relation par voie électroniqu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742-PGP.html/identifiant=BOI-INT-AEA-30-20230111>, 검색일자: 2023. 1. 18.; IBFD, “Tax Authorities Publish Guidelines on DAC7 Rules,” 2023. 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2\\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2_fr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여 특정 EU 회원국의 플랫폼 운영자들은 특정한 형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일 이전의 거래 및 2023년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는 기존의 「조세일반법」 제242bis조의 보고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벨기에

### [초과이익세 시행]

■ 벨기에는 2022년 12월 22일, 정유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을 입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sup>12)</sup>

- 벨기에 2023/2024 예산안에 따라 정유기업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초과이익세를 부과함<sup>13)</sup>
  - 벨기에 내에 정제 시설이 있고 정제 영업을 하는 등록된 정유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수입한 원유의 톤당 6.9유로<sup>14)</sup>가 부과됨
  - 2022년도 경우, 가스, 휘발유의 주요 참여자

(participants primaires)로 정의된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소비를 위해 출시한 제품의 입방미터당 7.8유로<sup>15)</sup>가 부과됨

- 초과이익세는 연대기여금(contribution de solidarité) 형식으로 부과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 초과이익세의 시행은 EU의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규정(2022/1854)’을 일부 이행하기 위한 것임<sup>16)</sup>
  - 초과이익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10배 이상, 매출의 20%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독일

### [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 감면 협의 체결]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12월 29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독일의 세액공제 신청절차 변경에 따라 독일-스위스 간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의 원천

12) Belgiquelex, “16 DECEMBRE 2022-Loi instaurant une contribution de solidarité temporaire à charge du secteur pétrolier (1),” 2022. 12. 22.,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article\\_body.pl?language=fr&pub\\_date=2022-12-22&caller=summary&numac=2022043066](https://www.ejustice.just.fgov.be/cgi/article_body.pl?language=fr&pub_date=2022-12-22&caller=summary&numac=2022043066), 검색일자: 2023. 1. 18.; IBFD, “Belgium Enacts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2\\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2_be_1.html), 검색일자: 2023. 1. 18.

13) IBFD, “Government Council Approves Proposal to Levy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31\\_be\\_1%23tns\\_2022-10-31\\_be\\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31_be_1%23tns_2022-10-31_be_1), 검색일자: 2023. 1. 25.

14)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0원임

15)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480원임

16) EUR-Lex,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22R1854>, 검색일자: 2023. 1. 2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징수세 세액을 경감하는 새로운 절차를 협의함을 발표함<sup>17), 18), 19)</sup>

- 2022년 12월 19일 독일과 스위스는 독일 원천징수세 경감을 위해 독일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사용료(저작권료 등)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청하여 환급하거나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sup>20)</sup> 상황을 통해 원천징수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함
- 독일의 원천징수세 공제신청 절차 전자화에 따라 상황신청 및 공제신청은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협약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sup>21)</sup>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 [2022 연간세법 최종승인]

■ 독일 연방의회(Bundesrat)는 2022년 12월 16일 연

간세법(Jahrsteuergesetz)<sup>22)</sup>을 승인하며 2023년부터 연금의 세액공제, 특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률 인상 관련 법률이 적용됨<sup>23)</sup>

- 2023년부터 법정연금(Rürup) 가입자 중 연금 납입액(연금소득) 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연금 수령자의 연금 지급 시에만 과세됨<sup>24), 25)</sup>
  - 연방재무부는 상술한 연금의 이중과세 방지 조치로 인해, 2023년 약 32억유로, 2024년에는 18억유로의 세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함<sup>26)</sup>
- (태양광 발전기 면세) 2023년부터 민간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중 출력이 최대 30kWp 인 발전시스템의 매입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sup>27)</sup>

- 17) 독일 연방재무부, "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auf dem Gebiete der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Vermögen(DBA-Schweiz): Konsultationsvereinbarung betreffend das Verfahren zur Entlastung von im Abzugswege einbehaltenen deutschen Steuern," 2022. 12.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Internationales\\_Steuerrrecht/Staatenbezogene\\_Informationen/Laender\\_A\\_Z/Schweiz/2022-12-29-konsultationsvereinbarung-betreffend-das-verfahren-zur-entlastung-von-im-abzugswege-einbehaltenen-deutschen-steuern.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Internationales_Steuerrrecht/Staatenbezogene_Informationen/Laender_A_Z/Schweiz/2022-12-29-konsultationsvereinbarung-betreffend-das-verfahren-zur-entlastung-von-im-abzugswege-einbehaltenen-deutschen-steuern.html), 검색일자: 2023. 1. 30.
- 18) IBFD, "Germany and Switzerland Sign Consultation Agreement on Procedure for German Withholding Tax Relief Under Tax Treaty," 2023. 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5\\_de\\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5_de_2.html), 검색일자: 2023. 1. 31.
- 19) DBA, 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auf dem Gebiete der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Vermögen(DBA-Schweiz): 독일-스위스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 분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 20) Germany-Switzerland Income and Capital Tax Treaty, § 28
- 21) 독일 연방국세청(Bzst), "Abzugsteuerentlastung," <https://www.bzst.de/DE/Unternehmen/Abzugsteuern/Abzugsteuerentlastung/abzugsteuerentlastung.html#js-toc-entry4>, 검색일자: 2023. 1. 30.
- 22) 연간세법(Jahrsteuergesetz)이란 법률을 개정하는 독일의 독특한 입법 형식으로 유사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조항법률(Artikelgesetz) 일종임
- 23) 독일 연방재무부(BMF), "Jahressteuergesetz 2022(JStG 2022)," 2022. 12.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1. 17.
- 24) 독일 연방재무부(BMF), "Lindner: Rentenbeiträge ab 2023 voll absetzbar," 2022. 1. 1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Rentenbesteuerung/rentenbeitraege-ab-2023-voll-absetzbar.html>, 검색일자: 2023. 1. 17.
- 25) (Einkommensteuergesetz(EStG), § 10
- 26) 2023년 2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3,046억원, 약 2조 4,213억원임
- 27) 독일 연방재무부(BMF), "Gewinnerzielungsabsicht bei kleinen Photovoltaikanlagen und vergleichbaren Blockheizkraftwerken," 2021. 10.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Einkommensteuer/20211029-gewinnerzielungsabsicht-bei-kleinen-photovoltaikanlagen-und-vergleichbaren-blockheizkraftwerken.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Einkommensteuer/20211029-gewinnerzielungsabsicht-bei-kleinen-photovoltaikanlagen-und-vergleichbaren-blockheizkraftwerken.html), 검색일자: 2023. 1. 17.

- (주거용 건물 감가상각)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정액 감가상각률이 기존 2%에서 3%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감가상각률은 2023년 1월 1일 완공된 건물부터 적용함<sup>28), 29)</sup>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 스페인

### [2023년 예산법 제정]

- 스페인은 2022년 12월 23일, 2023년 예산법을 제정하여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사항을 도입함
-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과 모성 수당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sup>30)</sup>
  - 복수의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기준액이 기존 1만 4,000유로에서 1만 5,000유로로 인상됨
  - 또한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을 순근로소득 1만 6,825유로 미만에서 1만 9,747.5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확대함
  -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관련 저작물의 소득은 기존 15%에서 7%로,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은

- 기존 19%에서 15%로 세율을 인하함
-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7%의 추가 감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객관적 추정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영업자의 순소득 공제는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직접 추정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비용의 공제율을 5%에서 7%로 확대함
- 출산을 하였거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나, 30일 이상 사회보장 프로그램(Security Social)에 등록되어있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여성으로 모성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
- 기존에는 해당 사회보장 프로그램 또는 상호공제조합에 등록된 여성에게만 모성 수당이 지급됨
- 연금저축과 관련한 소득의 경우 20만유로에서 30만유로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26%에서 27%로 인상하고, 30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도입함

-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만유로 미만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3%로 인하함<sup>31)</sup>
  -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현재 25%이나, 신생 기업 및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8) Einkommensteuergesetz(EStG), § 7 Absetzung für Abnutzung oder Substanzverringerung

29) 독일 연방재무부(BMF), "Jahressteuergesetz 2022(JStG 2022)," 2022. 12.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12-20-JStG-2022/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1. 31.

30) IBFD, "Spain-Budget 2023: Spain Slashes CIT for Small Corporations, Amends PIT Rates," Allowances(03 Jan.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3\\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3_es_1), 검색일자: 2023. 1. 17.

31) 상동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또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2,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최저한세가 적용됨<sup>32)</sup>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제 및 대리납부 적용 대상, 대손금 관련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함<sup>33)</sup>
  - 운송, 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고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된 종결 조항 적용 대상이 비과세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 및 운송 수단 관련 고용으로 제한됨
    - 상기 언급한 무형의 서비스에는 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상표, 광고, 컨설턴트, 엔지니어, 변호사 등의 서비스 양도 등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이 폐기물 및 고철 플라스틱 및 섬유 재료를 다루는 기업가 및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공급물까지 확장되며, 다음과 같은 공급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대상 외의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 혹은 알선
    - 부가가치세 적용 영역에 포함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품 공급
    - 부가가치세 적용 영역에 설정되지 않은 양도인, 취득자 이외의 수출업자 또는 해당 수출업자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제3자에 의한 상품의 수출
  - 대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가 다음과 같이 수정됨

- 국외 파산 절차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 과세표준 수정을 허용함
- 경정청구서 발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 사법 또는 공증 청구가 요구되었던 기존과 달리, 채무자에게 지불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단을 완화함
- 최소 비과세 채권액을 300유로에서 50유로로 인하함
- 여성 위생용품, 예방약 및 비의료용 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4%로 인하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 포르투갈

### [초과이익세 법안 승인]

- 포르투갈 의회는 2022년 12월 20일 특정 부문 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sup>34)</sup>
  - 2018~2021년 평균 연간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에너지 및 식품유통 부문 기업의 2022년 및 2023년 이익에 적용됨
    -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정유 활동에 종사하

32) PwC, "Spain, Corporate-Taxes on corporate income," 2023. 2. 1., <https://taxsummaries.pwc.com/spain/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text=The%20general%20CIT%20rate%20in,and%20its%20type%20of%20business>, 검색일자: 2023. 2. 6.

33) IBFD, "Spain-Spain Gazettes Budget Law 2023, Limits VAT Supply of Services Rules, Amends Applicability of Reverse Charge Mechanism," 2023. 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2\\_es\\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02_es_2), 검색일자: 2023. 1. 17.

34) William Hoke, "Portuguese Windfall Tax on Energy, Food Distribution Approved," *Tax notes International*, v. 109, n.1, January 2, 2023, p. 120.

는 기업을 비롯하여, 슈퍼마켓 및 대형할인점을 보유한 유통 부문 기업도 대상이 됨<sup>35)</sup>

- 포르투갈의 기본 법인세율은 21%이며, 초과이익세 세율은 33%로 결정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 핀란드

###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에 관한 법률 제정]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 추가세액공제에 관한 법률(Law 1298/2022)을 관보에 게재함<sup>36)</sup>

-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와 전기 대비 초과 발생액에 대한 특별 추가세액공제로 구분됨

- 일반 연구개발비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중 최대 50만유로<sup>37)</sup>를 한도로 당기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당기 공제금액이 5,000유로<sup>38)</sup>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특별 추가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 최대 50만유로<sup>39)</sup>를 한도로 전기 대비 실제 초과 발생

한 연구개발비용의 4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인건비 또는 용역 형태의 연구개발비용에도 적용 가능함
- 다만 납세자가 2021년부터 2027년 사이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임시 추가세액공제를 기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 추가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추가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특별 추가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네덜란드

### [증여세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30일, 증여세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법령을 발표함<sup>40)</sup>

-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핵심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증여세 면제 규정) 현행법상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

35) IBFD, "Portugal - Portugal Plans Windfall Tax on Energy and Retail Sectors, Prime Minister Says," 2022. 10.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28\\_pt\\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28_pt_1), 검색일자: 2023. 1. 17.

36) News IBFD, "Finland Enacts New R&D Incentives," 2023. 1.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3\\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03_fi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37)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085만원임

38)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0만원임

39)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085만원임

40) News IBFD, "Netherlands Grants Exemption From Gift Tax in Case of Accumulation With Corporate Income Tax," 2022. 12.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30\\_nl\\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30_nl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한 법령을 업데이트함

- 법인세 과세대상인 협회 또는 재단에 의한 청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에 지급되는 경우, 청산금이 포함된 과세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청산금이 포함된 과세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거주주택 증여재산 공제) 거주주택 증여재산 공제액을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임
- 자녀의 거주 주택 구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금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0만 6,671유로<sup>41)</sup>에서 2만 8,947유로<sup>42)</sup>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주택 구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
- (증여세 환급)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기부금 증여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 기부자가 기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귀속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사망으로 인

하여 증여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중국

###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감면정책 발표]

- 중국 재정부와 세무국은 2023년 1월 9일,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감면 등에 관한 정책을 재정부 및 세무국의 공고 [2023] 1호에 발표함<sup>43)</sup>
  - 증치세 면제대상, 징수율 감면, 매입세액 추가 공제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소규모 납세자<sup>44)</sup>란 연간 과세매출액이 500만위안<sup>45)</sup> 이하인 자로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3%이지만 해당 정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또는 1%의 징수율을 적용함
  - 월매출 10만위안<sup>46)</sup>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함
  -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매출액에 대하여 1%의 세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추가공제 정책의 적용을 받는 생산

41)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74만원임

42) 2023년 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74만원임

43) IBFD, "China Clarifies Exemption and Reduction of Value Added Tax for Small-scale Taxpayers in 2023," 2023. 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1\\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1_cn_1.html), 검색일자: 2023. 1. 17.

44) 국세청, 「2021 재중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1. 4., p. 89.

45) 2023년 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9억 975만원임

46) 2023년 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826만 7,000원임

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납세자에 대하여 생산 서비스 납세자는 5%, 생활서비스 납세자는 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추가공제 적용요건은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4가지 업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일본

**[2023년 예산안 제출]**

■ 일본 여당은 국회에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함<sup>47)</sup>

- 해당 예산안은 물가안정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실현 등과 같은 정부의 장단기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환경의 개발, 공급망 강화,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함

■ 창업,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며 대규모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R&D 세금 인

센티브 제도를 개정함

-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억엔<sup>48)</sup> 한도로 비과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주식 양도차익이 창업이나 창업 전 기간의 투자에 사용될 때 비과세가 적용됨
  -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면제 대상이 확대됨
- 대규모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 25% 세액공제 한도를 연구개발비 증감률에 따라 20~30%로 바뀌는 제도가 도입되며, 개방형 혁신 R&D 스타트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 및 계약연구를 장려할 예정임
  -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정한 경력을 가진 연구원을 채용하는 법인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가 신설됨

■ 국제 과세와 관련하여 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의 필라 2에 따른 소득 포함 규칙(IIR)이 시행될 예정임

■ 개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수준이 극도로 높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최저한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개인들이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NISA와 관련된 비과세를 확대함

- NISA에서 과생된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면제 한도는 할부 투자유형의 경우 1,800만

47) IBFD, 'Budget 2023: Japan to Introduce New Tax Incentive for Start-ups, Minimum Tax on High Income Earn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9\_jp\_1.html,' 검색일자: 2023. 1. 16.

48)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8억 9,160만원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엔<sup>49)</sup>(기존 800만엔<sup>50)</sup>), 성장투자 유형의 경우 1,200만엔<sup>51)</sup>(기존 600만엔<sup>52)</sup>)으로 확대할 것이며, 비과세 적용 기간이 영구화됨<sup>53)</sup>

- 관련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 소득세에 대한 1%의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건 특별소득 세율이 1% 인하되고 전체 재건 재원 확보를 위한 과세기간이 연장됨

■ 법인세 금액에 4~4.5%의 가산세가 새로 부과되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에서 500만엔<sup>54)</sup>의 공제를 허용함

■ 담뱃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친환경 차에 대한 자동차 톤수세에 대한 현행 조세감면은 2023년 말까지 변동이 없으며,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세금감면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 뉴질랜드

### [유류세 인하 3월 말까지 연장 후 종료 예정]

■ 2022년 12월 19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sup>55)</sup>

● 뉴질랜드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1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였음

● 다만 3월 한 달 동안의 인하율은 리터당 25센트<sup>56)</sup>에서 리터당 12.5센트<sup>57)</sup>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임

●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3년 3월 31일 종료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는 인하 전으로 돌아갈 예정임

■ 지난 2022년 뉴질랜드 정부는 여러 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음<sup>58)</sup>

● 2022년 3월 14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6월 15일까지 유류세를 리터당 25센트 감면하는 조치를 처음 시행하였음

● 이어 2022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2년 8월

49)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002만 4,400원임

50)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56만 6,400원임

51)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34만 9,600원임

52)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67만 4,800원임

53) 기존 비과세 적용 기한은 성장형의 경우 5년, 적립형의 경우 20년이었음

54) 2023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22만 9,000원임

55) IBFD, "New Zealand - Government Ends Transport Tax Relief Measures," 2022. 1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nz\\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23_nz_2.html), 검색일자: 2023. 1. 17.

56)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8원임

57)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원임

5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2-07호)」, 2022, p. 15.

16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22년 7월에는 동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여전히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으므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였으나,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힘<sup>59)</sup>

- 또한 4월 1일부터 대부분의 복지수당(가족, 학생, 노인)이 인상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 1월 말까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13억달러<sup>60)</sup>를 지출하며, 금번 연장으로 추가 1억 1,600만달러<sup>61)</sup>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EU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잠정 합의]

■ EU는 2022년 12월 12일,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sup>62), 63), 64)</sup>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ETS에 기반한 탄소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EEA 국가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임
- CBAM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는 'Fit for 5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EU 탄소 배출규제 기준과의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물리게 됨

■ 금번 합의로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개이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을 개시하여 본격 시행은 3~4년 후로 계획함

- 2030년까지 모든 EU ETS 대상 산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59) 뉴질랜드 정부, "Govt extending cost of living support," 2022. 12. 14., <https://www.beehive.govt.nz/release/govt-extending-cost-living-support>, 검색일자: 2023. 1. 17.

60)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298억원임

61) 2023년 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9억원임

62) European Council, "EU climate action: provisional agreement reached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2022. 12.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3/eu-climate-action-provisional-agreement-reached-on-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 검색일자: 2023. 1. 16.

63) Elodie Lamer, "EU Member States Reach Required Majority on CBAM Deal," *Tax Notes International*, Vol. 109, No.1, 2023. 1. 2., p. 93.

64) IBFD, "European Union - EU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Agreement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2. 12.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13\\_e2\\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13_e2_2.html), 검색일자: 2023. 1. 16.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 EU 집행위원회, 크로아티아의 유로지역 및 쉥겐 지역 합류 발표(2022. 12. 30.)<sup>1)</sup>

-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1일부로 유로지역의 2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고 쉥겐(Schengen)<sup>2)</sup>지역에 가입
  - 2022년 수렴보고서(Convergence Report)<sup>3)</sup>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채택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사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를 통해 쉥겐지역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음을 확인
  - 2022년 9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중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크로아티아쿠나를 유로로 점차 대체할 계획
    - 1유로 = 7.53450크로아티아쿠나 고정환율로 교환

#### ■ EU 집행위원회, 2023년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을 위한 예산 규모를 17억유로로 확

대 계획(2023. 1. 18.)<sup>4)</sup>

- (배경) EU는 1992년부터 110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2021년에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응하여 글로벌 인도주의적 영향을 강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계획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2억 780만유로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의 지역 분쟁, 강제 이주, 기후 충격 피해 지원에 1억 8,150만유로
  - 콩고민주공화국의 장기 분쟁 피해와 수단, 남수단, 우간다,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서 기후변화와 무력 충돌로 인한 이주민 지원에 3억 3,070만유로
  - 중동, 북아프리카의 지역 위기와 사라위 난민 해결을 위해 3억 8,220만유로
  - 아시아(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라틴아메리카의 취약계층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에 2억 3,700만유로

1) EU 집행위, "Euro and Schengen: Croatia joins the Euro and Schengen areas," 2022. 12. 3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90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907), 검색일자: 2023. 1. 19.

2) 쉥겐 조약(Schengen provisions)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약으로,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EU 5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EU 국가를 포함(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루마니아 제외).

3) 격년마다 유로지역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

4) EU 집행위, "Humanitarian Aid: EU increases funding to €1.7 billion for 2023," 2023. 1.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5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53), 검색일자: 2023. 1. 19.

- 연중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억 4,150만유로, 예상치 못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1억 2,200만유로, 혁신 프로젝트 및 정책조치에 1억 830만유로

■ EU 통계청, 2022년 3분기 재정통계 발표(2023. 1. 23.)<sup>5)</sup>

● (재정수지) 유로지역<sup>6)</sup>과 EU 27개국의 2022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GDP의 3.3%와 3.2%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악화

- 재정수지 악화는 주로 총지출의 상당한 증가에 기인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응 조치가 2022년 3분기부터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이 적자를 기록

- 총수입과 총지출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 분기에 비해 그 영향은 감소

● (정부부채)<sup>7)</sup> 유로지역과 EU의 2022년 3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GDP의 93.0%와 85.1%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2%p, 1.3%p 하락

- GDP 규모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보다 큼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중이 하락

- 부채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78.2%),

이탈리아(147.3%), 포르투갈(120.1%)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5.8%) 불가리아(23.1%), 룩셈부르크(24.6%) 순으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불가리아(1.9%p), 체코(1.7%p), 프랑스(0.3%p), 스웨덴(0.2%p) 등 4개국은 부채 비중이 증가한 반면, 그리스(-5.3%p), 사이프러스(-3.8%p), 포르투갈(-3.3%p), 이탈리아(-3.0%p) 등 23개국은 하락

<표 1>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Q3	2022 Q2 (잠정치)	2022 Q3 (잠정치)
<b>유로지역 19개국</b>			
재정수지	-4.1	-2.0	-3.3
정부수입	47.0	47.5	47.2
정부지출	51.1	49.5	50.5
정부부채	97.3	94.2	93.0
<b>EU 27개국</b>			
재정수지	-3.6	-1.8	-3.2
정부수입	46.7	46.8	46.4
정부지출	50.3	48.6	49.6
정부부채	89.7	86.4	85.1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출처: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2% of GDP in the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bp>, 검색일자: 2023. 1. 25.

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3.0% of GDP in euro area",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ap>, 검색일자: 2023. 1. 25.

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3.0% of GDP in euro area",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ap>, 검색일자: 2023. 1. 25.

5)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2% of GDP in the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bp>, 검색일자: 2023. 1. 25.; \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3.0%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5.1% of GDP in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ap>, 검색일자: 2023. 1. 25.

6)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7) ESA 2010에 정의된 통화 및 예금(AF.2), 부채 증권(AF.3) 및 대출(AF.4) 등을 포함하며 명목가치로 표기



IMF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3. 1. 31.)<sup>8)</sup>

- (동향) 미국, 유로지역 등 많은 국가의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세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민간소비 및 투자, 재정지원이 주요 요인
  - 억눌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복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
  - 하지만 2022년 4분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 미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의 고빈도 경제활동 지표들은 대부분 둔화
  -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부동산 투자 위축은 중국의 경제둔화를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세계무역 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감소
  - 긴축통화정책이 수요와 인플레이션의 진정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2024년까지 완전한 물가안정 실현 가능성은 낮음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3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연

료 및 비연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감소

-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가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임금상승률 등 과거 비용 충격의 2차 파급효과 지속
  - 2022년 유럽은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감소한 후 2024년 3.1%로 다시 상승할 전망
  - 지난 10월 전망 대비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0.2%p 상향 조정
  - 2023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고물가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요인
  - 다만, 2023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로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등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2%, 2024년 1.4%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9%, 2023년 4.0%, 2024년 4.2%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4%, 2024년 1.0%로 하락하지만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3," 2023. 1. 3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1/31/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3>, 검색일자: 2023. 1. 31.

- 2024년 하반기에 반등할 전망
- 2022년 내수 회복의 이월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0.4%p 상향 조정
  - 2024년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0.2%p 하향 조정
- (유로지역) 2023년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한 후 2024년 1.6%로 반등할 전망
- 2023년 전망치는 유럽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한 효과가 2022년 반등의 이월효과, 에너지 가격 인하, 구매력 회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으로 상쇄되어 0.2%p 상향 조정
- (영국) 2023년 경제성장률은 -0.6%로 높은 에너지 소매가격과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0.9%p 하향 조정
- (일본) 지속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 등으로 2023년 1.8% 성장하지만 2024년에는 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9%로 하락할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0%에서 2023년 5.2%로 상승한 뒤 2024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는데, 이는 지난 40여 년간 최초
  - 기업의 역동성 감소와 더디게 진행되는 구조개혁에 따라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세계 물가상승률은 2022년 8.8%에서 2023년 6.6%, 2024년 4.3%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팬데믹 이전(2017~2029년)의 3.5%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 2023년 유가는 약 16%, 비연료 원자재 가격은 6.3%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세계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여전히 더 크지만, 지난 10월 전망 이후 부정적 위험은 다소 완화
- 상방위험으로는 ① 억눌린 수요의 증가와 ② 급격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음
- 팬데믹 동안 재정지원으로 축적된 과도한 민간 저축은 보복소비를 부추길 수 있음
  - 다만 보복소비는 근원물가지수 상승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져 추후 더 큰 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부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 압력 완화는 임금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은 상품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켜 물가상승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음
- 세계경제전망에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하방위험으로는 ① 중국의 회복지연 ②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③ 부채 부실화 ④ 고물가 지속 ⑤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가격조정 ⑥ 지정학적 분열 등이 있음
- 낮은 면역 인구, 불충분한 병원의 수용력, 부동산 시장 위기 심화 및 금융 부문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요 감소와 공급망 문제를 통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화는 식량가격 및 식량 수급 불안정으로 유럽 및 저소득 국

가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다음 동절기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저소득 국가의 약 15%가 부채 부실화(debt distress)<sup>9)</sup> 상태이며, 저소득 국가의 약 45%와 신흥국의 약 25%는 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상태임
-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은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가, 가스, 식품가격의 상승과 중국의 경제 회복은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시킬 수 있음
- 물가안정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여건의 선부른 완화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통화긴축을 야기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초기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킴
- (정책 권고)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금융 및 부채 안정성을 위해 거시건전성 도구 배치 및 부채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강화
  -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유지) 대부분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달성이며, 물가 불안정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실질 정책 금리를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긴축은 수요를 진정시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대비 조치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의 백신 접종 및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 (금융 안정성 보장) 거시건전성 도구를 사용하여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도입된 은행 금융 부문과 위험이 축적된 비은행 금융 부문과의 데이터 및 관리감독의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공통 기준 도입과 감독 강화가 시급
- (부채의 지속가능성 회복) 저성장과 고금리로 인해 몇몇 경제에서 공공부채 비율이 증가했는데, 부채 구조조정 및 리프로파일링(Reprofiling)<sup>10)</sup>을 조기 시행하면 추후 과도한 조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취약계층 지원) 소득, 인구 통계, 과거 에너지 사용기록 등을 기반으로 적격 가구를 선별하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등으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할 필요
  - 생계비 위기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 정부의 지원은 성장에 대한 완충효과

9)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DSA)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개도국들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금융 수요와 상환 능력에 따라 개도국의 부채위험성(Risk of debt distress)을 낮음(low), 보통(moderate), 높음(high), 위험(indebt distress)의 4단계로 구분

10) 국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과 같은 약한 강도의 채무조정(soft restructuring)

&lt;표 2&gt; 2023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추정	전망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1	2022	2023	2024	2023	2024
세계 경제	6.2	3.4	2.9	3.1	0.2	-0.1
선진국	5.4	2.7	1.2	1.4	0.1	-0.2
미국	5.9	2.0	1.4	1.0	0.4	-0.2
유로지역	5.3	3.5	0.7	1.6	0.2	-0.2
독일	2.6	1.9	0.1	1.4	0.4	-0.1
프랑스	6.8	2.6	0.7	1.6	0.0	0.0
이탈리아	6.7	3.9	0.6	0.9	0.8	-0.4
스페인	5.5	5.2	1.1	2.4	-0.1	-0.2
일본	2.1	1.4	1.8	0.9	0.2	-0.4
영국	7.6	4.1	-0.6	0.9	-0.9	0.3
캐나다	5.0	3.5	1.5	1.5	0.0	-0.1
그 외 선진국 <sup>2)</sup>	5.3	2.8	2.0	2.4	-0.3	-0.2
한국	4.1	2.6	1.7	2.6	-0.3	-0.1
신흥개도국	6.7	3.9	4.0	4.2	0.3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7.4	4.3	5.3	5.2	0.4	0.0
중국	8.4	3.0	5.2	4.5	0.8	0.0
인도 <sup>3)</sup>	8.7	6.8	6.1	6.8	0.0	0.0
유럽 신흥개도국	6.9	0.7	1.5	2.6	0.9	0.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7.0	3.9	1.8	2.1	0.1	-0.3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5	5.3	3.2	3.7	-0.4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8	3.8	4.1	0.1	0.0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sup>4)</sup>	10.4	5.4	2.4	3.4	-0.1	-0.3
선진국	9.4	6.6	2.3	2.7	0.0	-0.4
신흥개도국	12.1	3.4	2.6	4.6	-0.3	0.0
원자재 가격(미국달러)						
오일 <sup>5)</sup>	65.8	39.8	-16.2	-7.1	-3.3	-0.9
비연료	26.4	7.0	-6.3	-0.4	-0.1	0.3
세계소비자물가 <sup>6)</sup>	4.7	8.8	6.6	4.3	0.1	0.2
선진국 <sup>7)</sup>	3.1	7.3	4.6	2.6	0.2	0.2
신흥개도국	5.9	9.9	8.1	5.5	0.0	0.2

주: 1) 현재 및 '22년 10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2년 10월 WEO 전망 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22~23회계연도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2023년 5.4%, 2024년 6.8%

4) 수출 및 수입량(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장률의 단순 평균치

5) 브렌트유,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중질유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이며, 2022년 11월 29일 현재 선물시장에 근거하여 가정한 미국달러 기준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3년 81.13달러, 2024년 75.36달러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지역 2023년 5.7%, 2024년 3.3%, 일본 2023년 2.8%, 2024년 2.0%, 미국 2023년 4.0%, 2024년 2.2%

1. 실질실효환율은 2022. 10. 26~11. 23.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2.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3," Table 1, p. 6(한국 경제성장률은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uary2023update.ashx>의 Real GDP Growth 항목 참고, 검색일자: 2023. 2. 2.)

와 에너지가격 및 근원물가지수 상승 제한에 기여하였지만, 보편적 지원에 대한 비용은 증가

- 또한 에너지 가격을 통한 에너지 수요 억제 효과를 유지할 필요
- 보조금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소득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일회성 연대세(solidarity taxes)를 부과하여 지출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함
- (공급 강화) 공급정책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병목현상과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
  - 녹색에너지 기술의 공급망에 대한 투자 장려는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고 녹색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자간 협력 강화) 지정학적 분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함
  - (팬데믹 억제) 백신과 치료제 유통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며, 백신 기술 개발과 미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 설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임
  - (부채 부실화 해결) G20 공동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에 따라 부채 처리를 요청한 국가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며, 공동 프레임워크 자격이 없는 중소득 국가 등 더 많은 경제의

부채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함

- (국제무역 강화)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면 무역의 분절화 위험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복원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국제 금융안전망 활용) 글로벌 경제충격에서 IMF의 선제적 금융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충격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녹색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려면 탄소세 국제조정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



OECD

■ OECD,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1. 10.)<sup>11)</sup>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된 OECD 회원국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10.3%로 2022년 10월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2022년 8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
- OECD 회원국 평균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 28.1%에 이어 11월에 23.9%로

11) OECD, "Consumer Prices, OECD - Updated: 10 January 2023," 2023. 1. 10., <https://www.oecd.org/newsroom/consumer-prices-oecd-updated-10-january-2023.htm>, 검색일자: 2023. 1. 11.

&lt;표 3&gt; OECD 회원국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연평균	연평균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품목									
OECD 전체	1.4	4.0	5.9	10.3	10.2	10.3	10.5	10.7	10.3
G7	0.9	3.5	5.4	7.9	7.6	7.5	7.7	7.8	7.4
유럽연합(HIPC)	0.7	2.9	5.2	9.6	9.8	10.1	10.9	11.5	11.1
유로지역(HIPC)	0.3	2.6	4.9	8.6	8.9	9.1	9.9	10.6	10.1
G20	2.7	4.3	5.9	9.2	9.2	9.2	9.5	9.5	9.0
캐나다	0.7	3.4	4.7	8.1	7.6	7.0	6.9	6.9	6.8
프랑스	0.5	1.6	2.8	5.8	6.1	5.9	5.6	6.2	6.2
독일	0.5	3.1	5.2	7.6	7.5	7.9	10.0	10.4	10.0
이탈리아	-0.1	1.9	3.7	8.0	7.9	8.4	8.9	11.8	11.8
일본	0.0	-0.3	0.6	2.4	2.6	3.0	3.0	3.7	3.8
영국	1.0	2.5	4.6	8.2	8.8	8.6	8.8	9.6	9.3
미국	1.2	4.7	6.8	9.1	8.5	8.3	8.2	7.7	7.1
식량									
OECD 전체	3.4	3.5	6.7	13.3	14.5	15.0	15.3	16.1	16.1
G7	2.7	2.5	5.3	10.6	11.7	12.2	12.3	12.7	12.6
유럽연합(HIPC)	2.5	1.6	4.3	11.6	12.8	14.0	15.4	17.3	17.9
유럽지역(HIPC)	2.0	1.3	3.5	10.4	11.5	12.4	13.8	15.5	16.0
에너지									
OECD 전체	-6.3	15.5	25.7	40.8	35.2	30.1	28.9	28.1	23.9
G7	-7.4	16.3	25.7	39.5	33.1	26.8	24.5	25.3	21.6
유럽연합(HIPC)	-6.1	12.6	24.6	41.1	38.3	37.5	39.4	38.7	33.3
유럽지역(HIPC)	-6.8	13.0	25.9	42.0	39.6	38.6	40.7	41.5	34.9
식량 및 에너지 제외									
OECD 전체	1.7	2.9	4.6	6.5	6.8	7.2	7.6	7.6	7.5
G7	1.3	2.6	3.9	4.7	4.8	5.1	5.4	5.3	5.1
유럽연합(HIPC)	1.1	1.8	3.0	4.6	4.9	5.2	5.7	6.0	6.0
유럽지역(HIPC)	0.7	1.5	2.6	3.7	4.0	4.3	4.8	5.0	5.0

출처: OECD, "OECD inflation declines to 10.3% in November 2022 as energy prices slow in most countries," 2023. 1. 10., <https://www.oecd.org/sdd/prices-ppp/consumer-prices-oecd-01-2023.pdf>, 검색일자: 2023. 1. 11.

하락하여, 2021년 9월 이후 최저수준에 도달

-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감소했으며 체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만 증가

- 하지만 38개 OECD 회원국 중 34개국의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10%를 넘어서고, 14개국은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 2022년 11월 OECD 회원국 평균 식품가격 상승률은 16.1% 수준을 유지한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7.5%로 소폭 하락

■ OECD, 2022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3. 1. 19.)<sup>12)</sup>

12)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OECD - Updated: January 2023," 2023. 1. 19.,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january-2023.htm>, 검색일자: 2023. 1. 20.

<표 4>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1			2022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8.8	68.9	66.0	67.7	67.4	68.1	68.6	69.0	69.4	69.4
G7	72.1	72.2	69.6	71.1	70.7	71.4	71.9	72.2	72.5	72.6
유럽연합	68.1	68.0	67.1	68.4	68.2	68.8	69.2	69.7	70.1	.
유로지역	67.9	67.9	66.7	68.0	67.7	68.5	68.9	69.3	69.7	69.5
호주	74.3	74.4	72.7	74.4	75.2	74.8	75.3	76.6	77.2	77.5
캐나다	74.2	74.1	70.0	73.2	72.5	73.8	74.7	75.1	75.4	75.0
프랑스	66.4	66.5	66.1	67.3	67.1	67.6	67.7	67.9	68.1	68.4
독일	75.7	75.8	76.2	75.8	75.3	67.6	67.7	67.9	68.1	68.4
이탈리아	59.1	59.0	57.5	58.3	57.9	58.8	59.4	59.5	60.2	60.1
일본	78.1	78.0	77.7	77.9	77.8	78.0	78.0	78.1	78.5	78.6
한국	66.8	67.0	65.9	66.5	66.4	66.8	67.2	68.0	68.5	68.7
스페인	63.3	63.3	61.0	62.7	62.5	63.4	63.9	64.1	64.7	64.7
영국	76.2	76.5	75.4	75.1	75.0	75.3	75.5	75.6	75.5	75.5
미국	71.4	71.7	67.1	69.4	68.9	69.8	70.5	71.0	71.3	71.4

주: 1. 고용률 = 100 × (취업자 수) ÷ (15~64세 인구수)

2. 독일의 경우 LFS를 포함한 새로운 독일 통합 가구조사 시스템 도입 문제로 2020년 1~4분기 데이터는 LFS micro-data가 아닌 추가 기타 통합 가구조사 데이터임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OECD - Updated: January 2023," 2023. 1. 19., Table 2 재구성,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january-2023.htm>, 검색일자: 2023. 1. 20.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3분기에 각각 69.4%와 73.2%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를 집계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022년 3분기 OECD 회원국 고용률은 여성의 경우 62.4%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남성의 경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76.6%로 감소
  - OECD 회원국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최고 수준인 65.9%, 남성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2년 11월에 4.9%를 유지했는데, 이는 5달 연속 같은 수준이며 데이터를 집계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여성 실업률은 5.1%로 소폭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4.7%로 안정세를 보임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2022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6.0%와 6.5%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미국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2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장기 재정전망 발표(2022. 12. 16.)<sup>13)</sup>

13) 미국 의회예산처, "CBO's 2022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2022. 12. 16., <https://www.cbo.gov/publication/58564>, 검색일자: 2023. 1. 17.

- (제도 개요) 미국의 공적연금은 노령·유족·장애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sup>14)</sup>의 기금으로 운용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세(payroll tax)이며 보험료율은 소득의 12.4%<sup>15)</sup>
  - 2021년 말 기준 OASDI 기금의 보유고 잔액은 2조 8,520억달러이며, 2021년 총수입은 1조 883억달러, 총지출은 1조 1,446억달러<sup>16)</sup>
- (재정전망) CBO는 예정된 급여계획(scheduled benefits)하에서 OASDI 기금은 2033년 고갈되며, 이후에는 예정된 급여를 적시에 전액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향후 75년 동안 공적연금의 재정수지 적자(actuarial deficit)<sup>17)</sup>는 GDP의 1.7%이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4.9%에 해당
  - 이는 연방정부가 근로소득세율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4.9%p 증가시킬 경우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
- (시나리오) CBO는 지급 가능한 급여수준(payable benefits)을 적용할 경우 2034년 공적연금의 급여는 예정된 급여보다 23% 작고, 2096년에는 35% 작을 것으로 전망
  - 2033년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현행 급여계획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며, 고갈 이후에는 연간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간지출을 정하는 시나리오 설정
  - 2096년 이후에는 예정된 급여계획(scheduled benefits)과 지급 가능한 급여수준(payable benefits)의 차이가 일정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Janet L. Yellen), 국가채무 상한선 도달에 디폴트 우려 및 의회에 대책 촉구(2023. 1. 13.)<sup>18)</sup>
  - 옐런 장관은 2023년 1월 19일에 국가채무가 법정 상한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의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신
  - 의회는 2021년 12월 16일 정부의 법정 채무한도를 31조 3,810억달러로 합의하는 법안(P.L. 117-73)을 승인하여 채무한도를 증액하였음
  - 2023년 1월 19일 기준 국가채무 잔고는 31조 4,164억달러<sup>19)</sup>로 법정 채무한도를 초과
  - 이에 재무부는 두 가지 특별조치를 시행할 예

1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성격을 가졌으며, 퇴직자 및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과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출처: 신화연 외,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2.)

15)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는 본인 전액 부담

16) OASDI 신탁위원회, “The 202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2, <https://www.ssa.gov/oact/tr/2022/tr2022.pdf>, 검색일자: 2023. 1. 18.

17) OASDI 기금의 재정수지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계리적 수지(actuarial balance)가 사용되었음. (계리적 수지) = (기금 적립금 +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18) 미 재무부,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Sends Letter to Congressional Leadership on the Debt Limit,” 2022. 1. 1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188>, 검색일자: 2023. 1. 19.

19) 미 재무부, “Fiscal Data,” <https://fiscaldata.treasury.gov/americas-finance-guide/national-debt/>, 검색일자: 2023. 1. 19.

정이며, 보유현금과 특별조치로 6월 초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별조치는 ① 퇴직 공무원 및 장애인 연금<sup>20)</sup> 및 우정국 퇴직자 건강보험기금<sup>21)</sup>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거나(redeem) 새로운 투자를 유예하는 방식 ② 정부채권투자기금(G Fund)의 일부에 대한 재투자를 유예하는 방식을 포함

● 엘런 장관은 정부의 채무불이행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가 적시에 채무한도를 증액하거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

-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국 경제, 미국인의 생계, 국제 금융 안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강조

- 2011년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역사상 유일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언급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무조건적인<sup>22)</sup> 채무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여야가 대치 중<sup>23)</sup>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2022년 12월) 발표(2023. 1. 18.)<sup>24), 25)</sup>

● (경제활동) 미국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지난달(2022년 11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응답자들은 향후 몇 달간 성장세가 약할 것으로 (little growth) 전망

-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판매가 강하게 증가

- 높은 물가상승률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특히 중·저소득 소비자들에게서 두드러짐

- 여행 부문 응답자들은 연휴기간 여행으로 인해 완만 혹은 강하게 활동이 증가했다고 답변

- 제조활동은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공급망 교란은 완화되었다고 보고

-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판매 및 건설 감소에 기인

- 비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음

- 은행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높아진 차입 비용으

20)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21) Postal Service Retiree Health Benefits Fund

22) 미 백악관,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January 17,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1/17/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january-17-2023/>, 검색일자: 2023. 1. 19.

23) NBCNews, "House Republicans gear up for a debt ceiling fight with the White House and Senate Democrats," January 17, 2023,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debt-ceiling-deadline-will-republicans-pass-rcna65710>, 검색일자: 2023. 1. 19.

24)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2. 11. 24.~2023. 1. 9. 동안의 데이터 반영

25) 미 연방준비제도, "Beige Book," 2023. 1.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301.htm>, 검색 일자: 2023. 1. 19.

- 로 인해 상업대출도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농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좋아졌으며, 에너지 부문 활동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 (고용) 고용은 지속적으로 완만에서 보통(modest to moderate)<sup>26)</sup> 수준의 속도로 증가
    -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가용성(labor availability)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기업들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
    -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자들을 해고하기보다 필요시 자연 감원(attrition)을 통해 인원을 줄일 계획
    - 노동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압력이 높은 상태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고
    -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유치 및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복지를 증대
  - (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selling price)는 완만(modest)하거나 보통(moderate)의 속도로 상승
    - 많은 지역의 제조업자들은 운송비와 재화가격(철강 및 목재 포함)이 하락했다고 보고하

- 였으나, 일부는 투입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
- 많은 소매업자들은 비용 상승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물가 민감도가 더 높음을 시사
    - 몇몇 소매업자들은 더 많은 판매증가와 재고처리를 위해 1년 전보다 더 많은 할인과 프로모션을 진행
  - 종합적으로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은 완화(moderate)될 것으로 예상



## 일본

###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2023. 1. 23.)<sup>27), 28)</sup>
  - 재무성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114조 3,812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6.3%)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sup>29)</sup>
    - (세출) 일반세출은 72조 7,317억엔 규모이며,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조 3,992억엔, 국채비 25조 2,503억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

26) “보통의(moderate)”가 “완만한(modest)”보다 더 강한 수준을 의미함(출처: WSJ,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ate’ and ‘modest’ growth in the Fed’s beige book? Which is better?”, 2016. 1. 19., <https://www.wsj.com/articles/whats-the-difference-between-moderate-and-modest-growth-in-the-feds-beige-book-which-is-better-1453217728>, 검색일자: 2023. 1. 19.)

27)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政府案,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fy2023.html#R5kokkai](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fy2023.html#R5kokkai), 검색일자: 2023. 1. 25.

28) 일본 재무성, 「第211回国会における鈴木財務大臣の財政演説」, 2023. 1. 23.,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statement/fiscal\\_policy\\_speech/20230123.html](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statement/fiscal_policy_speech/20230123.html), 검색일자: 2023. 1. 25.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2월호, 2022, pp. 28~31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총출액은 114조 3,812억엔 규모

- (세입) 조세 및 인지도입은 69조 4,400억엔, 기타수입은 9조 3,182억엔 규모이며, 공채금은 35조 6,230억엔 규모

- 스즈키 슌이치 재무부 장관은 일본이 직면한 많은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재정건전화를 이행해 나가면서 풍요로운 일본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필요성을 강조

## [기타]

###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1. 19.)<sup>30)</sup>

- (경제) 2023년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경제 성장 둔화에 의한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압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및 공급 제약의 영향 완화로 경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3%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후, 정부 정책에 의한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되어 2023년 1.6~1.8%를 기록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우크라이나 정세, 원자

<표 5> 일본의 2022~2024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제외)
2022년	1.9~2.0(1.9)	3.0~3.0(3.0)
2022년 10월 전망	1.8~2.1(2.0)	2.8~2.9(2.9)
2023년	1.5~1.9(1.7)	1.6~1.8(1.6)
2022년 10월 전망	1.5~2.0(1.9)	1.5~1.8(1.6)
2024년	0.9~1.3(1.1)	1.8~1.9(1.8)
2022년 10월 전망	1.3~1.6(1.5)	1.5~1.9(1.6)

- 주: 1.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하거나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3.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1月)」, 2023. 1. 19.,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1b.pdf>, 검색일자: 2023. 1. 19.

재 가격, 대내외 감염병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3. 1. 24.)<sup>31), 32)</sup>

- (시나리오별 가정) 2023년까지의 경제동향은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을 토대로, 2024년 이후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동향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등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

30)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1月)」, 2023. 1. 19.,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1b.pdf>, 검색일자: 2023.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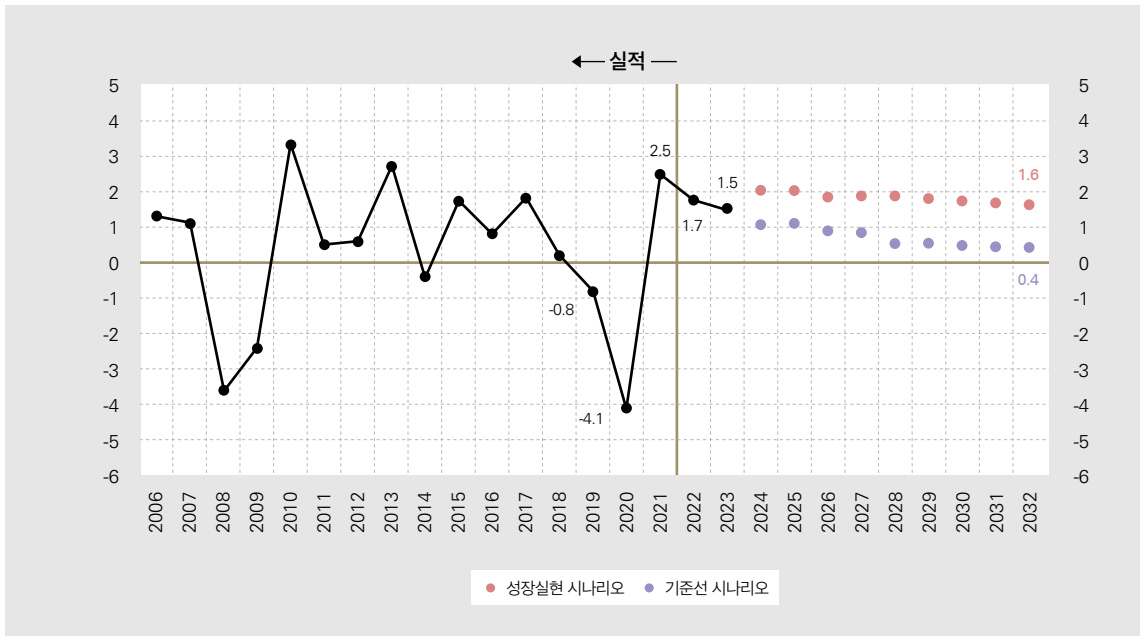
31)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1月24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1. 24.,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32) 본 전망의 목적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는 것임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sup>33)</sup>에서 2024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모두 1.1%로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sup>34)</sup>에서는 성장분야에서의 민간 제휴 투자 촉진으로 생산성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여,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 명목 GDP 성장률은 3.2%로 전망
- (재정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4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1.3%, 채무잔고는 215.3%로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대책의 효과 등으로 인한 민간수요 확대, 세출 증가 둔화 등으로 2024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1.0%, 채무잔고는 210.7%로 전망
- (중장기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의 명목 및 실질 GDP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0%대 중반을 유지할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의 203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6%, 명목 GDP 성장률은 3.1%로 전망

[그림 1]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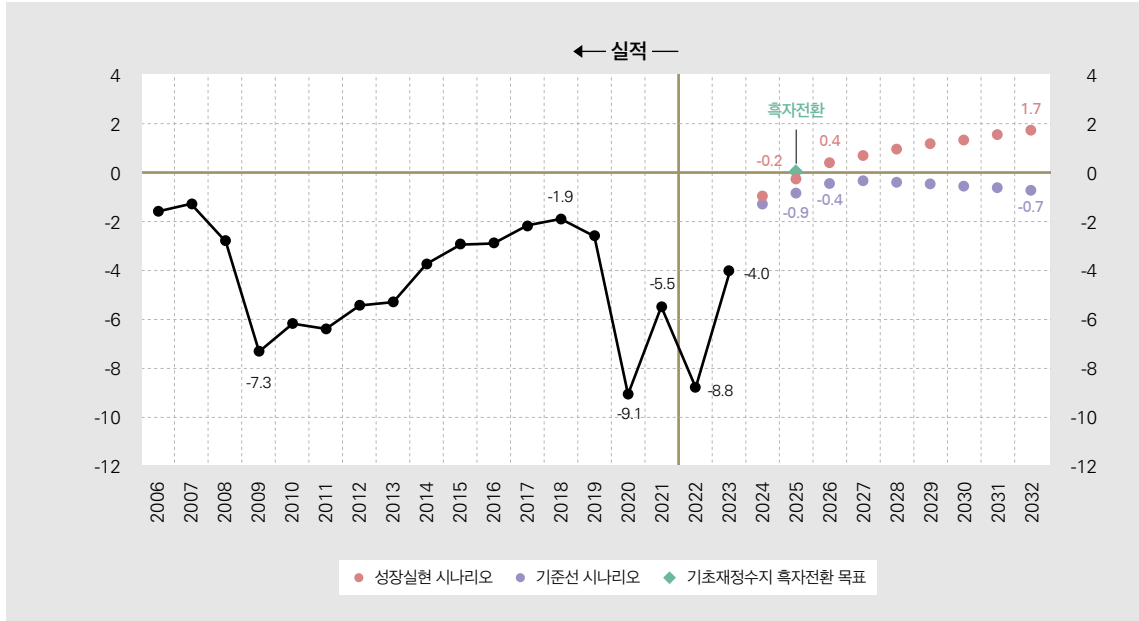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1月24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1. 24., pp. 4~5,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33)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향후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약 0.6% 가정 등)

34)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 목표를 과거 실적 수준으로 실현하는 경우(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 속도로 증가 등을 가정(현재 약 0.5% 수준에서 약 1.4%까지 상승))

[그림 2]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1月24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1. 24., p. 6,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y/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 (중장기 재정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0.9% 수준으로 전망 기간 동안 적자 폭이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후반에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세출효율화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 -0.2%, 2026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재무부, 2022회계연도 잠정결산 발표 (2023. 1. 12.)<sup>35)</sup>
  - (수입) 신규차입을 제외한 연방정부 수입은 목표 대비 90억유로 높은 3,659억유로를 기록
    - 2022회계연도 조세수입은 목표 대비 87억 유로 높은 3,372억유로를 기록

35) 독일 연방재무부, “Lindner: 23,5 Mrd. Euro weniger Schulden als geplant,” 2023. 1.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1/2023-01-12-vorlaeufiger-haushaltsabschluss-2022.html>, 검색일자: 2023. 1. 17.

- (지출) 2022회계연도의 총지출은 계획 대비 145억유로 낮은 4,813억유로를 기록
- (신규차입) 따라서 실제 신규차입이 계획보다 적게 소요되어 2022회계연도의 신규차입은 계획 대비 235억유로 낮은 1,154억유로를 기록
  - 2022회계연도의 신규차입 규모는 이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
- (자본지출) 2022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은 462억유로로 2020년(503억유로)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
  - 자본지출의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89.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
- (평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연방정부가 추진한 종합적 지원 조치의 효과가 이번 결산에서 나타났다고 평가
  - 정부의 지원 조치는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기여

〈표 6〉 독일의 2022 회계연도 잠정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2022 (목표) (A)	2022 (잠정결산) (B)	차이 (B)-(A)
총지출	557.1	495.8	481.3	-14.5
총수입	557.1	495.8	481.3	-14.5
조세수입	313.5	328.4	337.2	+8.7
세외수입	28.2	28.4	28.7	+0.3
신규차입	215.4	138.9	115.4	-23.5
비고: 투자	45.8	51.5	46.2	-5.3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Lindner: 23,5 Mrd. Euro weniger Schulden als geplant," 2023. 1. 12.

- 또한 이전 연도에 비해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상당히 감소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필요한 규모와 조화를 이루는 데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다만 이는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이 정규 절차에 비해 늦어졌던 영향도 반영된 것임

## [기타]

- 독일 연방통계청, 2022년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3. 1. 13.)<sup>36)</sup>
  - (GDP) 독일의 2022년 GDP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0.7% 높은 수준을 기록
    - 2022년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병목 현상,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추격 효과(catch-up effect)와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의 영향으로 성장
    - 코로나19 제한 해제 후의 추격 효과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된 기타서비스(+6.3%),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4.0%)과 같은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강한 증가세가 나타남
    - 가계 최종소비지출의 증가가 2022년 독일 경제의 성장을 주도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4.6%, 정부 최종소

36) 독일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0\\_811.html](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0_811.html), 검색일자: 2023. 1. 18.

<표 7> 독일의 GDP 성장률(가격조정)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가계 최종소비지출	1.6	-5.7	0.4	4.6
정부 최종소비지출	2.6	4.0	3.8	1.1
총고정자본형성	1.9	-2.3	1.2	0.2
건설	1.0	3.9	0.0	-1.6
기계장비	1.0	-11.0	3.5	2.5
기타	6.1	-3.3	1.0	2.1
수출	1.3	-9.3	9.7	3.2
수입	2.9	-8.5	9.0	6.7
총부가가치	0.8	-3.9	2.7	1.8
제조업	-1.3	-8.1	5.1	0.2
건설	-3.6	2.0	-1.4	-2.3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	3.4	-7.5	2.8	4.0
정보·통신	3.9	0.1	3.6	3.6
사업서비스	0.1	-5.0	4.4	2.6
공공서비스·교육·보건	1.5	-1.1	2.0	2.5
기타 서비스	1.8	-11.6	0.4	6.3
GDP	1.1	-3.7	2.6	1.9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비지출은 1.1% 전년 대비 증가

- 건설의 총고정자본형성은 1.6% 하락했고 기계·장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2.5% 증가
- (노동시장) 2022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4,560만명을 기록
- (일반정부 재정) 2022년 말 기준,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330억유로

<표 8>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정부 재정수지 규모	53.2	-147.6	-134.3	-101.6
GDP 대비 비율	1.5	-4.3	-3.7	-2.6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감소한 1,016억유로를 기록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직전 2개년 대비 현저히 감소
-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종료로 예산이 절감되었으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정부 지원 조치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



[예산·결산 등]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3년 예산법」<sup>37)</sup>(2022. 12. 31.)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sup>38)</sup>(2022. 12. 24.) 최종 승인 및 공포
- 2022년 9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법안<sup>39)</sup>을 2022년 12월 17일 의회가 채택<sup>40)</sup>하고, 2022년 12월 29일 프랑스 헌법위원회(Le

37)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1)," 2022. 12. 3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845631>, 검색일자: 2023. 1. 12.

38)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1)," 2021. 12. 23.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6791754?init=true&page=1&query=financement+de+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3&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6791754?init=true&page=1&query=financement+de+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3&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3. 1. 12.

39) 프랑스의 2023년 예산법안은 분원 『2022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3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40) 프랑스 예산국,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du PLF 2022 par l'Assemblée nationale," 2021. 12. 15.,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112>, 검색일자: 2022. 1. 17.

<표 9> 프랑스의  
2023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실적)	2022 (전망)	2023 (예산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 (Solde structurel (1))	-5.1	-4.2	-4.0	-4.0
경기변동치 (Solde conjoncturel (2)) <sup>1)</sup>	-1.4	-0.6	-0.8	-0.8
특별조치 (Mesures exceptionnelles (3)) <sup>2)</sup>	-0.1	-0.1	-0.2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 (1+2+3))	-6.5	-5.0	-5.0	-5.0

주: 1) 경기변동으로 인한 GDP 조정분

2)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으로 구조적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

출처: 「2023년 프랑스 예산법」(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2022. 12. 31.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2023년 예산법」으로 제정

- 「2023년 예산법」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은 -5.0%로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

- 2022년 9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sup>41)</sup>을 2022년 12월 2일 의회가 채택하고,<sup>42)</sup> 2022년 12월 2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으로 제정

<표 10> 프랑스의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예산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건강보험(Maladie)	-6.5	-7.1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2.2	2.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3.5	-3.6
가족수당기금(Famille)	1.3	1.3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2	-1.2
전체 사회보장부문 (Toutes branches)	-7.6	-8.4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부문 (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6.8	-7.1

출처: 「2023년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 12. 24.

## [기타]

-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 연금개혁안 발표(2023. 1. 10.)<sup>43), 44)</sup> 및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 제출(2023. 1. 23.)<sup>45), 46)</sup>
  - 연금개혁안은 제도의 균형을 맞추고 공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퇴직 연령을 높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자 함

41) 프랑스의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은 본원의 「2022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3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42) 프랑스 의회,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et adoption du texte en lecture définitive, 2022.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3-rejet-d-une-motion-de-censure-et-adoption-du-texte-en-lecture-definitive>, 검색일자: 2023. 1. 12.

43) 프랑스 정부, Projet pour l'avenir du système de retraites: ce qu'il faut retenir, 2023. 1. 10.,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projet-pour-lavenir-du-systeme-de-retraites-ce-quil-faut-retenir>, 검색일자: 2023. 1. 12.

44)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Réforme des retraites: les annonces de la Première ministre," 2023. 1. 10.,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7798-reforme-des-retraites-les-annonces-de-la-premiere-ministre-e-borne>, 검색일자: 2023. 1. 25.

45) 프랑스 정부, "La réforme des retraites présentée en Conseil des ministres," 2023. 1. 23.,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a-reforme-des-retraites-presentee-en-conseil-des-ministres>, 검색일자: 2023. 1. 25.

46)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1. 24.,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reforme-des-retraites-2023-projet-de-loi-plfss-rectificatif>, 검색일자: 2023. 1. 2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정년을 2023년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
-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김
- 기여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저연금 수령액을 최저임금 85%인 1,200유로로 약 100유로 인상
-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연금지출의 약 180억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1월 23일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RSS 2023)을 의회에 제출



### 영국

- 영국 노동·연금부, 2023-24회계연도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금 계획 발표(2023. 1. 3.)<sup>47)</sup>
- (배경) 정부는 지난 가을 보고서에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패키지를 계획
- 이에 노동·연금부는 2023-24회계연도 생활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발표
- (내용) 소득에 따른 적격 대상에게 최소 900파운드, 최대 1,350파운드 지급
- 2023-24회계연도 동안 총 900파운드의 생활비 보조금이 3번에 나누어 지급되고, 해당 자에 한해 장애수당 150파운드와 연금수당 300파운드는 별도로 지급
- 생활비 보조금 대상은 800만가구 이상, 장애수당 대상자는 600만명 이상, 연금수당 대상자는 8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sup>48)</sup>

**<표 11> 프랑스의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예산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건강보험(Maladie)	-7.1	-7.2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2.2	2.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3.6	-3.9
가족수당기금(Famille)	1.3	1.3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2	-1.3
전체 사회보장부문 (Toutes branches)	-8.4	-8.8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부문 (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7.1	-7.5

출처: 「2023년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1. 23.

4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illions of low-income households to get new Cost of Living Payments from Spring 2023,” 2023. 1.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low-income-households-to-get-new-cost-of-living-payments-from-spring-2023>, 검색일자: 2023. 1. 17.

48) 영국 통계청의 2022년 3월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국의 총가구는 약 2,808만가구, 총인구는 약 6,636만명으로 추정(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ataset Families and household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datasets/familiesandhouseholds>, 검색일자: 2023. 1. 26.)

**<표 12> 영국의 2023-24회계연도 생활비 보조금 지급 일정**  
(단위: 파운드)

구분	금액	지급기간
1차 생활비 보조금 (First Cost of Living Payment)	301	2023년 봄
장애수당(Disability Payment)	150	2023년 여름
2차 생활비 보조금 (Second Cost of Living Payment)	300	2023년 가을
연금수당(Pensioner Payment)	300	2023~24년 겨울
3차 생활비 보조금 (Third Cost of Living Payment)	299	2024년 봄

출처: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illions of low-income households to get new Cost of Living Payments from Spring 2023," 2023. 1. 3.

- (일정) 생활비 보조금은 올해 봄, 가을, 그리고 내년 봄에, 장애수당은 여름에, 연금수당은 겨울에 지급

■ 영국 재무부, 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 제도 발표(2023. 1. 9.)<sup>49)</sup>

- (목적) 에너지 시장의 심한 가격변동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에게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하여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 (내용) 적격한 영국 기업 및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해 할인을 적용
  - 면허가 있는 에너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적격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의 경우, 가스요금은 최대 6.97파운드/MWh, 전기요금은 최대 19.61파운드/MWh 할인

-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에너지 및 무역집약도가 높은 부문(주로 제조업) 기업에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
  - 가스요금은 최대 40파운드/MWh, 전기요금은 89.1파운드/MWh 할인
- (지원규모) 2023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총지원규모는 55억파운드
- 최근 도매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지원규모 축소
  - 2022년 11월 발표된 가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동안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를 위한 지원 규모는 180억파운드

49) HM Treasury, "The government unveils new "Energy Bills Discount Scheme" for businesses," 2023. 1.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new-energy-bills-discount-scheme-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3. 1. 17.

# 재정포럼

2023년 2월호 통권 제320호

<b>발행처</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발행인</b>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b>편집위원장</b>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편집위원</b>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편집간사</b>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b>편집·제작</b>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3년 2월 15일 발행 / 통권 제32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